

2004년 발행 No. 2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안내서

-정책 및 절차-

2004년 3월

인도 뉴델리 정부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공업부)
산업지원사무국(SIA)

발행처:
인도 뉴델리 정부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공업부)
산업지원사무국(SIA)

공업차관

인도정부
상공부(산업정책진흥국 : 공업부)
Udyong Bhawan, New Delhi

서 언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추진요소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지속적으로 자유화 되어왔다. 인도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제 대다수의 부문과 사업에서 자동승인으로 허가되고 있는데 인도중앙은행(RBI)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FDI 제안을 즉각 실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승인 및 허가절차 또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간소화 시켜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 추진 기관은 외국 투자자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고와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정부는 이제 과학 기술 잡지와 인쇄물, 정기 간행물과 잡지, 그리고 석유제품 판매, 중소 규모의 석유 개발 분야와 또한 석유 제품의 공급자들에게 자동승인제도를 통해 100%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제 천연 가스/LNG 파이프라인 분야에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100%까지 허용되고 있다. 민영 은행 부문의 지분 발행 또한 49%에서 74%까지 현재 상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수요에 부응한 사례다.

본 안내서는 최근의 인도에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산물로서 이 내용은 부서의 웹사이트(www.dipp.nic.in)에도 올라있다.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떤 의문 사항도 매일 16:00-17:00 시(인도 표준시간)까지 가능한 채팅 혹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자메일을 이용해서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안내서가 현재의 투자가들과 잠재적인 투자가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안내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든 조언을 환영하는 바이다.

락스미 찬드(Lakshmi Chand)

전화: 2301 1815 / 2301 2667 팩스: 2301 6298

전자메일 : secy_ipp@ub.nic.in 웹사이트 : www.dipp.nic.in

2004 년 8 월

본 안내서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안내서 -정책 및 절차-” 는 잠재적인 투자자와 기업인들을 위한 종합안내서로 발간되었으며 법률자료로서 발간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울러 여기 게재된 내용이 관련 법령, 규칙, 규정, 정책성명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후자가 우선함도 밝혀둔다.

	쪽번호
제 1 장 서언	1
제 2 장 산업정책	2
산업허가제	2
산업허가 취득 절차	2
허가취득 면제 절차-기업주 허가취득 면제약관(IEM)	2
IEM 신청 절차	3
입지 정책	4
영세기업에 관한 정책	4
시행중인 사업(COB) 관련 허가취득 절차	4
환경허가	5
제 3 장 외국인 직접투자	6
자동승인 정책	6
(A) 신규기업	6
(B) 기존기업	7
신규 및 기존기업의 자동승인 절차	8
정부승인 정책	8
정부승인 획득 절차-외국투자진흥위원회 (FIPB)	8
과실송금	9
기존회사의 주식발행 및 평가	9
국제주식 예탁증서(GDRs)/미국주식 예탁증서(ADRs)/외환전환 사채권	10
외환전환 사채권 (FCCBs)	10
해외 자본유치 절차 및 외환조달 -	10
FCCBs 와 ADRs/GDRs	
선호주	11
일시불 수수료 , 사용료 및 대외통상차용액(ECB)에 대한 주식 발행	11

제 4 장	외국기술협정	12
	자동승인 정책	12
	자동승인 절차	12
	정부승인 정책	13
	정부승인 절차 - 사업승인위원회(PAB)	13
제 5 장	100% 수출지향기업(EOUs) 및 경제특구(SEZs)	14
	설립을 위한 정책(자동승인)	14
	설립을 위한 정책(정부승인)	14
	EOU 와 SEZ 내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승인절차	14
	SEZ 에 100 % EOU/공장설립을 위한 FDI/해외거주인도인(NRI)	
	투자를 위한 정책	15
	SEZ 설립을 위한 FDI/NRI 투자정책- 사업승인위원회(PAB)	15
	SEZ 설립절차	15
	SEZ 에 FDI/NRI 의 투자를 위한 정책	15
제 6 장	산업공단, 모델타운과 성장센터의 설립	16
	자동승인 정책	16
	정부승인을 위한 정책 - 권한위임협의체	16
	산업공단/모델타운/성장센터의 설립과	16
	산업공단의 소득세 혜택 활용 절차	
	산업공단/모델 타운/성장 센터를 위한 FDI/NRI 투자 정책	
제 7 장	전자 하드웨어 기술공단(EHTP)과 소프트웨어 기술공단(STP)	
	투자계획 17 자동승인 정책	17
	정부승인 정책 - 관계부처 상임협의체	17
	EHTP/STP 내 FDI/NRI 투자 절차	17
	EHTP/STP 승인 절차	18
제 8 장	투자 진흥	19
	목적지 /투자 인디아(Invest India)	19
	전시회/세미나	19
	홍보물	19
	웹사이트, 온라인 채팅 및 게시판 서비스(http://dipp.nic.in)	19
	국가 산업 분류등급(NIC 코드)	20
제 9 장	투자 촉진	21
	산업지원사무국(SIA)	21
	기업지원반(EAU)	21
	외국인투자실시청(FIIA)	21
	FIIA 회의	21
	특정국 투자가들과의 회의	22
	투자가와의 직접 접촉	22
	투자담당 관리	22
	FIIA 지역회의	

국별창구	23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	23
기타의 허가 및 승인 관련 정보	23
투자 ombuds맨제도	23
고충처리 담당 겸 공동사무국장	23
제 10 장 발간물	25
SIA 뉴스레터	25
SIA 통계	25
기타 발간물	25
e-Newsletter	
제 11 장 자주 접하는 질문(FAQs)	26

부록

- I. 공공부문 산업목록
- II. 산업(개발 및 규제)법(1951)에 의거한 산업허가 필수 산업목록
- III. 외국투자진흥위원회(FIPB)의 FDI 제안서 심사 지침
- IV. 부문별 FDI 지침
 - 부속 서류 A-은행업 FDI 지침
 - 부속 서류 B-무기 탄약류 제조허가 지침
 - 부속 서류 C- 통합지구 개발 FDI 지침(주택 및 건축자재 포함)
- V. 1991 년 잠정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 1 백만 이상 보유 도시목록
- VI. 허가/승인기관 및 웹사이트
- VII. 주요 담당부처/국 웹사이트
- VIII. 주/연방 웹사이트

제 1 장

서언

인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엄청난 투자 기회를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4 위의 경제규모를 지닌 세계 10 위의 산업국가이다. 또한, 인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닌 열 번째로 산업화 된 국가로서 약 3억 이상의 중산층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인도 경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산업의 탈규제, 투자절차의 간소화, 경쟁법 제정, 무역자유화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재정부문의 개혁, 환규제의 자유화와 더불어 특히 자유롭고 매력적인 투자친화적 제도를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인도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외국 기술 이전을 위한 가장 자유로운 정책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대개의 부문에서 자동승인제에 따라 100%까지 허용된다. 자동승인제에 따른 진입에는 단지 사후 신고만을 요할 뿐 다른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제반 승인에 대한 절차간소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다양한 목적에 요구되는 양식 또한 간소화되어 다운로드 포맷으로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http://dipp.nic.in>)에 들어있다. 인도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과 절차도 이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로부터 열람 가능하다. 본 안내서는 인도의 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과 함께 투자 촉진 기구에 대해 요약 설명하고 있다.

제 2 장

산업정책

정부의 자유화와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정책의 개혁으로 산업허가 요건을 줄였고 투자의 사업확장에 대한 규제도 제거하는 동시에 외국 기술과 직접 투자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산업허가제

2.1 아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제조업 허가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 i) 공공부문의 산업(부록 I)
- ii) 의무허가제 해당업종(부록 II).
- iii) 영세부문 제조업종(2.6 항에서 세부 설명)
- iv) 투자제안서가 입지규제에 배치되는 경우(2.5 항에서 세부 설명)

산업허가 취득 절차

2.2 (a) 의무허가 대상 사업의 착수를 위해 신청서 소정 양식 즉, 서식 FC-II 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은 1951 년 산업(개발 및 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발급된다. 서식은 산업지원사무국(SIA)의 기업지원반(Entrepreneur Assistance Unit; EAU) 및 모든 정부간행물 취급소, 인도대사관에서 구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진흥국(DIPP)의 웹사이트(<http://dipp.nic.i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 FC-II 신청서 제출처:

EAU of the SIA,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Udyog Bhawan, New Delhi - 110011.
(뉴델리 유독 바반 110 011 <우편번호>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산업지원사무국 기업지원반)

(c) 신청서는 뉴델리에서 2,500 루피 지급조건으로 횡선일람불 어음(Demand draft)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출납 회계담당(Pay & Accounts Officer,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앞으로 발행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d) 산업허가 증은 허가위원회의 추천으로 정부가 발급한다. 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4 내지 6 주간 후 내린다.

2.3 상당한 사업확장을 시도하는 기존기업을 포함한 산업허가 면제 대상 기업은 기업주 허가취득 면제약관(IEM) Part A 의 소정 서식을 작성해 인도 정부의 산업정책 진흥국의 산업지원사무국에 제출, 인정받아야 한다. 추가 승인절차는 없다. 생산에 돌입 즉시 IEM 의 Part B 도 작성해야 한다. 기존의 IEM 의 개정을 위한 제도도 도입되었다.

IEM 신청 절차

- 2.4 (a) IEM 서식은 모든 정부간행물 취급소, 각국의 인도대사관, 산업정책진흥국의 산업지원사무국 기업지원반 (Udyog Bhavan, New Delhi-110011)에서 구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 진흥국(DIPP)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http://dipp.nic.in>). IEM 이 작성되면 산업지원사무국 기업지원반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IEM 은 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최대 10 개 품목에 대하여 뉴델리 지급 조건의 횡선일람붙어음 1,000 루피를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출납 회계담당앞으로 발행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조 품목이 10 개를 초과하는 경우 10 가지의 추가 항목에 대해 250 루피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 (c) 해당 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경우, 산업지원사무국 등록번호(추후 조회용)가 기재된 컴퓨터 인정서가 접수대에서 즉시 발급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우편으로 해당 등록 번호가 발송된다. 추가 산업지원사무국 승인은 필요치 않다.
- (d) 모든 기업은 생산의 시작시기에 IEM 의 Part 'B' 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산업지원사무국 기업지원반에 제출해야 한다. Part B 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없다. 산업허가 면제 대상이거나 의무허가 대상인 기업체 모두가 월간 생산실적 보고서를 익월 10 일까지 아래 주소의 산업통계반으로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

To : Joint Director(공동사무국장)
Industrial Statistics Unit(ISU)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Room No.326, Udyog Bhawan,
New Delhi - 110 011,
Fax: 011-2301 4564

E-mail: vishu@ub.nic.in 이 정보는 산업생산지표(IIP)로 매월 정례적으로 작성된다. 월간 생산실적 보고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관청/부서/관계 기관등에 제출할 수도 있다. 상세한 내용과 소정 서식은

해당부서의 웹사이트:<http://dipp.nic.in> 에서 찾을 수 있다. 영세기업은 이 보고서를 해당 주 정부나 산업청장과 인도정부의 영세사업 및 농무국에 제출하고 영세사업지원처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e) IEM 검토과정에서 허가취득을 요하는 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IEM 은 산업지원사무국 기록에서 취소/삭제된다.

입지 정책

2.5 모든 기업체는 사업입지 선정에 있어 자유롭다. 1991 7 월 25 일 이전 “ 산업지구 ” 로 지정된 지역에 설립하지 않는 한 사업장이 표준 도심 지역 한계의 25Km 이내에 설립될 경우 산업허가가 필요하다. (부록-V 1991 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한 백만 이상 인구보유 도시목록 참조). 향후 "비공해산업"으로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쇄 및 기타의 산업은 이러한 입지제한에서 제외된다. 기업체의 입지는 지역 구획화와 토지사용규제의 대상이 된다.

영세기업에 관한 정책

2.6 기업체의 공장과 기계류의 고정자산 투자규모가 천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영세기업으로 규정한다. 영세기업은 해당 주 정부의 산업이사회/지역 산업센터에 등록 가능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독점 제조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영세기업은 상기 2.5 항의 입지제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외국 혹은 국내 기업체로부터 자기자본 24% 이상의 지분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기업(외국인 지분 포함)으로부터 보유한 지분이 24% 이상이면 공장과 기계에 대한 투자액이 천만 루피를 넘지 않더라도 영세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2.7 영세기업이 아닌 기업도 2.1 항에서 기술한 산업허가 취득으로 영세기업에 보류된 상품생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 영세기업은 영세기업업종 지정 생산품목 중 최소 50%를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한다. 영세기업업종 지정품목 생산에 관여하는 영세기업이 아닌 수출지향기업(EOU)는 이미 수출 규정에 따라 66%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속행사업(COB) 허가취득 절차

2.8 영세기업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이 자연적인 성장에 따라 공장과 기계의 투자규모가 영세기업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속행사업(COB)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COB 허가 획득에 수반되는 수출물량에 대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만약 영세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규모를 초과했을 경우, 별도의 산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이 요구된다. COB 허가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E"라는 개정 서식에 작성, 뉴델리에서 2,500 루피 지급조건으로 횡선일람불 어음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출납 회계 담당에게 신청시 동봉해야 한다.

환경허가

2.9 오염 관리조치로 발생하는 화학약품 혹은 재생 가능한 부산물이 영세기업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오염 관리조치를 채택할 목적으로 이러한 지정품목에 대한 수출의무 부과 없이 산업허가 취득 신청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10 기업주는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오염 통제와 환경에 관련 법적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1986 년의 환경(보호)법 1986 에 의거한 공시(94 년 1 월 27 일 자의 SO 60(E))에는 인도정부의 환경청으로부터 취득되어야 할 환경 허가에 관련된 30 여개의 사업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석유 화학 단지, 정유공장, 시멘트, 화력 발전소, 벌크 약제, 비료, 염료, 제지등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만일 투자액이 10 억 루피 미만의 경우 제조업종이 살충제, 벌크약제, 제약품 또는 석면포와 관련 제품, 합성페인트 단지, 광산 개발업, 일정 조건의 관광 개발, 히말라야 지역의 타르 도로공사, 증류소, 염료, 유리 공장이나 전기 도금 사업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허가는 불필요하다. 더우기 영세산업의 투자액이 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은 중앙 정부에 공지 한다는 조건 하에 환경 허가 취득에서 면제 될 수 있다. 화학 발전소의 일부 부문에 대한 환경허가권이 주 정부에 위임되었다. 생태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장소들(예: 아라발리 레인지(Aravalli Range), 해안, 둔벨리(Doon Valley), 다하누(Dahanu)에서의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인도정부 환경청에 의해 별도의 지침이 존재한다.

제 3 장

외국인 직접투자

3.1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자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추진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따라서 국내 투자에 대한 보완책으로 FDI 및 비거주 인도인[재외 인도인(NRIs) 과 인도계 사람(PIO)포함]에 의한 투자유치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3.2 FDI 는 기존의 지정정책에 따라 상한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소수의 부문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 자유롭게 허용 된다. FDI 는 사실상 모든

품목과 업종이 인도중앙은행(RBI)에 위임된 권한 아래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허용되며 기타 업종이나 사업은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허가는 외국인 투자진흥위원회(FIPB)의 추천에 따른다.

자동승인 정책

(A) 신규기업

3.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FDI/NRI 투자는 100%까지 자동승인 된다.

(i) 산업허가 필수부문:

- (a) 1951년 산업(개발 및 규제)법에 의거 산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b) 영세산업으로 지정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 (c) 1991년 정부가 공지한 신산업정책하의 입지정책에 의거 산업입지관련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ii) 이전/기존에 인도기업과 합작/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사업제안으로 1998년 간행물의 1998년 12월 14일자 공보기록과 같거나 연관된 분야. ("같거나" "연관된" 분야라 함은 1987년 국가산업등급분류(NIC) 1987 규정 3과 4에 해당). 그러나,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 분야의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외국인/NRI 투자자의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모든 신청.

(iv) 공지된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사업제안

자동승인제 활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외국투자진흥위원회(FIPB)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4 수출지향기업(EOU)/수출가공구(EPZ)/전자 하드웨어 기술공단(EHTP)/소프트웨어 기술공단(STP)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동승인 취득자격이 있다. 자동승인된 투자는 부문지정정책과 지분 상한 제약을 받게되며 인도중앙은행의 관리대상이 된다. 1987년 국가산업등급분류(NIC)는 FDI/NRI 투자관련 모든 사업과 등급을 설명해 주게 된다.

3.5 RBI는 정부가 승인한 신청에 대해 외환관리법(FEMA)에 의거 일반적으로 허가해 왔다. FIPB 승인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인도기업은 대외송금수납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발행을 목적으로 RBI로부터 추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기업은 송금을 수납하거나 외국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 30일 이내에 RBI 지역 사무소에 통고할 의무는 있다.

3.6 NRI에 송금과 100%까지의 주식 발행 또한 RBI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러한 기업은 NRI 에 주식발행 후 30 일 이내에 RBI 의 지역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기존기업

3.7 신규기업 외에 기존기업이 외국인 지분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FDI/NRI 투자의 자동승인 기회가 열려있다.

기존 지분이 순증하는 경우 추가 요건은 아래와 같다. .

- i) 지분의 증가가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없이 기존 기업의 지분확장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 ii) 송금통화가 외국환이며,
 - iii) 추가된 지분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할 것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FIPB 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인도기업 이사회 결의안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8 기존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의 요건

- i) 자동승인 업종에 해당할 것
- ii) 지분의 증가가 지분의 기초증가에 따른 것일 것
- iii) 외국지분은 외화로 이루어질 것

3.9 일찌기 공기업에 적용되었던 우선주로 할당된 주식에 배당된 날로부터 5 년 동안 어떤 형식으로든 양도될 수 없었던 인도증권관리위원회(SEBI) 요건은 발기인에 의해 공모 혹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전체분담 지분의 거치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3.10 FDI 와(혹은) 기술협력에 있어 자동승인은 같거나 관계된 분야에서 이미 합작투자나 기술이전/상표계약 등 공동제휴 한 바 있는 투자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3.11 ADB,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참여는 인도증권위원회(SEBI) 및 RBI 의 규정과 부문별 FDI 상한 규정에 따라 자동승인이 허용된다.

신규 및 기존 회사들의 자동인가 절차

3.12 자동승인 대상 신청서는 RBI 의 신청서식인 FC 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 승인하의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중앙은행은 인도기업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사전 승인없이 이러한 자동승인을 통해 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송금 수취후 30 일 내에 이 사실을 해당 중앙은행 지점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발행 후 30 일 내에 해당 인도중앙은행의 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NRI 투자에도 적용된다.

정부승인 정책

3.13 자동승인 대상이 되지않는 모든 사업은 3.3 항에 따라 외국투자진흥위원회(FIPB)를 경유한 정부허가를 요한다. 지금까지 FDI/NRI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지역/부문/사업은 정부의 결정이나 공고가 없는 한 현재의 방침을 따른다. 부문별 정책과 지분 상한에 관한 변경사항은 산업정책진흥국의 산업지원사무국이 공고한다.

3.14 승인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FIPB 가 FDI 제안서를 심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본서 부록-III 참조) FDI 와 외국 기술협력을 위한 부문별 지침서는 부록-IV 에 소개되어 있다.

정부승인 획득 절차-외국투자진흥위원회 (FIPB)

- 3.15 (i) 정부승인이 필요한 모든 외국 투자 제안서는 FIPB 의 심사를 거친다. FIPB 는 또한 외국 투자/외국 기술협력 관련한 복합 승인도 하고 있다.
- (ii) NRI 투자와 100% 수출지향기업(EOU)이 아닌 FDI 를 위한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경제과(DEA)에 FC-IL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iii) NRI 투자와 100% EOU 를 동반한 FDI 신청은 산업정책진흥국 산업지원사무국 기업지원반에 제출해야한다.
- (iv) 모든 관련 세부사항을 기재한 일반용지 신청서에 작성된 서류도 접수되며 수수료는 없다. 아래 정보가 FIPB 에 제출되는 신청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 (a) 신청인이 인도에서 금융 혹은 기술협력이나 상표계약을 현재 신청하는 분야와 같거나 연관된 분야에서 과거 체결했거나 현재 체결한 상태인지의 여부와
- (b) 그렇다면 그 세부 사항과 신규사업/기술협력(상표 포함) 신청의 당위성이 요구된다.
- (v) 신청서는 재외 인도공관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후속절차를 밟기 위해 공관은 경제과(DEA)로 이를 전달하게 된다.
- (vi) 재무부 경제과에 접수된 외국인 투자신청서는 접수된 지 15 일 이내에 FIPB 로 보내진다. FIPB 는 총 투자액 60 억 루피까지의 투자신청을 심사하게 되고 재무장관이 승인한다. 총 투자액이 60 억 루피를 초과할 경우 경제각료위원회(CCEA)에서의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vii) 모든 신청에 대한 결정은 30 일 이내 DEA 에 의해 전달된다.

과실송금

- 3.16 (i) 모든 외국 투자는 특별히 NRI 가 특별히 비상환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투자에 대한 주식 배당금은 공인 중매인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 (ii) NRI 는 RBI 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NRI 는 주식을 상환조건으로 보유하거나 소득세 당국이 발행한 필요한 NOC/세금 납입증서를 갖고 있으면 주식매각 수익금에 대한 송환을 은행에 의뢰할 수 있다.
- (iii) 사적인 경로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RBI 의 지점은 2000 년 5 월 3 일 고시 번호 FEMA(외국환관리법)20/2000 RB 의 규정 10.B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인도회사의 외국지분 투자 회수를 허용한다.
- (iv) 이윤, 주식 배당금 등(당좌계정 송금으로 분류됨)은 자유롭게 송금된다.

기존기업 주식발행 및 평가

3.17 공기업의 경우에 특별 결의안을 요구하는 우선주 배당은 1956 년의 회사 법에 준해 이루어져야한다. 상장사의 경우, 주식평가는 다음의 RBI/SEBI 지침에 준한다. 발행가는

- (a)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전 동안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관련주 종가의 주간 최고치와 최저치 평균이거나
- (b) 발행일로 2 주전 이전 동안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관련주 종가의 주간 최고치와 최저치 평균 중 하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거래는 발행일에 앞서 6 개월 동안 해당기업의 주식의 최대거래량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발행일은 주주총회의 소집일자로부터 30 일 전을 말한다. 기타 모든 경우에 기업은 과거 주식발행 통제기구의 지침을 따르는 RBI 규정에 의거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1997 년의 SAST(실질적 주식취득과 매수)규정을 포함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혹은 RBI 의 지침이 적용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따라야한다. 추가 정보는 SEBI(웹사이트:www.sebi.gov.in)에서 얻을 수 있다.

국제주식 예탁증서(GDRs)/미국주식 예탁증서(ADRs)/외환전환 사채권(FCCBs)

3.18 GDR/ADR 및 FCCB 의 발행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납입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액 상한 규제는 없다. 따라서 정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신청인은 최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나 기타) 양호한 기업활동을 꾸준히 한 기록을 보유해야한다. 이 요건은 발전, 통신, 석유탐사 및 정유, 항만, 공항 및 도로 등의 기간 산업분야에 한해 완화 가능하다.

3.19 한 기업이나 기업그룹에 의해 매 회계연도에 발행되는 GDR/ADR/FCCB의 수치계약은 두지 않는다. 만약 자동승인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한 GDR/ADR/FCCB 발행 이후 자동승인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한도를 쉽게 초과 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정부승인 대상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그 기업은 재무부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이전 외국투자진흥위원회(FIPB)를 통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3.20 부동산과 주식 시장 투자에 대한 특별 금지조치가 없는 한 GDR/ADR의 발행수익의 일반적인 사용제한은 없다. 단 FCCB의 발행 수익은 대외통상차입금 사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FCCB 판매수익의 25%는 일반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자본유치 절차 및 외환조달 - FCCBs 와 ADRs/GDRs

외환전환사채권 (FCCBs)

3.21 외환전환사채(FCCB)는 1993년 외환전환사채 및 보통주(주식예탁증서 제도를 통한)의 발행 계획에 따라 발행되고 비거주자에 의해 외환으로 신청되며 어떤 형태로든지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부채증서에 첨부된 지불관련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전체 혹은 일부분 교환 가능하다. 발행 회사의 외환 전환사채 혹은 보통주 발행자격은 다음과 같다.

- (i) 국제 주식예탁 증서를 통해 주식발행을 위한 FCCB 나 보통주를 발행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할 때
- (ii) 자동승인으로 미화 5천만불 까지 FCCB 를 발행할 수 있다.
- (iii) 5000 만 불에서 1 억만 불 사이의 금액인 경우, RBI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v) 1 억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재무부의 경제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주식예탁증서/국제주식예탁증서(ADRs/GDRs)

3.22 인도기업은 1993년 외환전환사채 및 보통주(주식예탁증서 제도를 통한)의 발행 계획과 이에 따른 인도 재무부의 지침에 의거, 자격을 갖춘 경우 RBI의 사전 승인 없이 ADRs/GDRs을 발행할 수 있다. 2001년 4월 2일 FEMA 공고 제 41에 의하면 인도기업은 최고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주주보유 주식에 대해 해외예탁으로 ADR/GDR의 발행을 후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발행된 국제주식예탁기금은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주명부이전제도를 통해 해외 증권거래소 혹은 장외거래소에서도 상장 가능하며, 한편 이러한 예탁증서는 비거주자에 의한 직접 매입, 취득 및 자유로운 양도도 가능하다.

우선주

3.23 우선주를 통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간주된다. 신청은 경우에 따라 자동승인 혹은 FIPB를 통해 처리된다. 우선주 발행을 위해 다음의 지침이 적용된다.

- (i)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식자본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외통상차용(ECB) 지침/상한과는 무관하다.
- (ii) 우선주는 전환옵션이 가능하면 상한규제를 받고있는 부문별 상한목적의 외국 직접자본으로 간주된다. 만약 우선주 전환옵션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외국인 직접 지분의 범주를 벗어난다.
- (iii) 전환기간은 회사법에 규정된 상한이나 주주들의 동의로 정해진 기간 중 짧은 기한을 따른다.
 - (iv) 배당률은 재무부에 의해 지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v) 우선주 발행은 SEBI와 RBI에 의해 규정된 지침이나 기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일시불 수수료, 사용료 및 대외통상차용액(ECB)에 대한 주식 발행

3.24 일시불의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및 상환 만기의 대환성 외환의 대외통상 차용액(ECBs)에 대한 지분 주식 발행은 적용가능한 모든 과세의무와 부문별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된다.

제 4 장

외국기술협정

4.1 인도산업에 차원 높은 기술 활력을 고취하고 기술력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기술의 도입은 FDI와 외국 기술협력협정을

통해 장려되고 있다. 외국기술협력은 RBI 를 통한 자동승인이나 정부승인으로 허용된다.

자동승인 정책

4.2 자동승인과 정부승인이 가능한 외국 기술협력 항목은 기술 노하우 수수료, 디자인과 도면에 대한 지급, 기술 서비스와 기술료이다. 외국 기술자의 임금, 인도기술자 해외 파견, 고유 원자재 시험, 제품, 외국의 고유한 선진 기술은 별도의 RBI 절차 및 규칙에 따르며 외국 기술협력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공장 및 기계의 수입에 대한 지급과 원자재 또한 외국 기술협력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항목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기업주는 RBI 에 문의할 수 있다.

4.3 RBI 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 외국 기술협력 협정에 대해 모든 기업에 주식소유의 외국지분 한도에 관계없이 다음 요건에 의해 자동승인 한다.

- (i) 일시불로 미화 200 만 불을 넘지 않는 경우;
- (ii) 기술료는 10 년간 판매액의 8%에 지급과 사용료 지급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판매고의 5%로, 수출의 8%로 한정된다.

위에 기술한 기술료 제한은 순수 세액이며 표준조건에 의해 계산된 것이다. 기술 이전이 없이 외국 제휴회사의 상표와 제품명 사용에는 수출액의 2%와 국내 판매액의 1%까지의 사용료 지급은 자동승인으로 허용된다. 기술이전의 경우, 특허 사용료는 외국 합작인의 상표사용과 상품명에 대한 사용료 지급도 포함된다. 상품명/상표에 대한 사용료는 순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순판매액이란 총판매액에서 대리점/상인의 커미션, 해상운송료를 포함한 운임, 보험,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 그리고 원자재 대금, 부품 및 외국 특허회사나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로부터 수입된 부품을 공제한 액수를 가리킨다.

자동승인 절차

4.4 이러한 외국 기술협정의 자동승인 신청은 FT 서식을 작성, RBI 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2 주 내에 승인을 받게된다.

정부승인 정책

4.5 다음의 분야에 속하는 사업은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 (a) 의무승인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 (b) 영세산업으로 지정된 제조업종
- (c) 인도 내에서 동일한 분야나 관련된 분야에서 이미 존재하는 합작 사업이나 기술이전/상표권 계약을 수반하는 사업신청("갈거나" "관련된" 분야는

- 1987 년 NIC 코드 의 3 자리 수 와 4 자리 수 에 의거 함)
(d) 4.3 에 기술 된 자동 승인 의 제한 범위 에 속 하지 않는 모든 사업 신청

정부 승인 절차 - 사업 승인 위원회 (PAB)

- 4.6 외국 기술 협정을 위한 모든 기타의 요청이 자동 승인의 일부 혹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모든 기존 기술 협력 협정을 연장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 절차를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FC-IL 서식을 작성, 뉴델리 유독 바반 (Udyog Bhavan) 의 상공부, 산업 정책 진흥국, 산업 지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수수료는 없다. 이 신청은 사업 승인 위원회 (Project Approval Board: PAB) 가 심사한 후 승인 하는데 신청서 제출 후 통상 4 내지 6 주 내에 결정 된다.

제 5 장

100% 수출 지향 기업 (EOUs) 및 경제 특구 (SEZs) 설립을 위한 정책 (자동 승인)

- 5.1 SEZ 의 개발 행정관 들은 다음의 제안에 대해 자동 승인을 허가 한다.
(a) 의무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 과 소프트웨어 와 IT 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
(b) 규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산업;
(c) 정 (正) 의 순외환 수익을 도모 하는 기업
(d) (d) 세관의 보세 규정에 순응 하는
- 5.2 기존 국내 관세 지역 (DTA) 의 EOU 로 전환 도 DTA 에 위치 하는 기업이 상기 요건을 충족 하고 인도 정부의 기타 수출 계획에 의거, 미 이행 수출 의무가 없는 경우.

설립을 위한 정책 (정부 승인)

- 5.3 자동 승인 대상이 아닌 신청은 개발 위원회 (DC) 에 의해, 통상국 승인 위원회 (BoA) 로 상정 된다. 동 위원회에 의해 신청서는 심사 되고 통상 6 주 내에 결정 사항이 전달 된다.

EOU 와 SEZ 내 설립 되는 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

5.4 100 % EOU 와 SEZ 에 위치하는 기업의 허가 신청은 SEZ 의 해당 개발위원 (DCs)에 자동승인과 정부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상공부가 발간한 2002-2007 판 수출 수입을 위한 절차 안내서에 나와 있으며 또한 정부 간행물 취급소에서 구할 수 있다. 신청서는 뉴델리에서 5,000 루피 지급조건으로 횡선일람불 어음을 상공부 출납 회계담당 앞으로 발행하여 함께 제출한다. 5.1 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청이 자동승인을 위한 기준에 합당하면 SEZ 의 개발 위원(DC)이 2 주 내에 승인서를 발부한다. 정부승인이 필요한 신청서는 승인 위원회 앞으로 개발 담당관에 의해 신청이 제시되고 승인은 통상 45 일 이내에 통고된다.

SEZ 에 100 % EOU/공장설립을 위한 FDI/해외거주인도인(NRI) 투자를 위한 정책

5.4 SEZ 에 100 % EOU 와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FDI/NRI 투자신청은 입지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동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허용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상세 사항은 통상국(웹사이트-<http://commerce.nic.in>)에 소개된 최근의 수출입정책에 나와있다. 자동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은 외국투자 진흥위원회(FIPB)가 심사하고 승인한다.

SEZ 설립을 위한 FDI/NRI 투자정책- 사업승인위원회(PAB)

5.6 상공부는 주 정부 약관에 의거 통상국이 발간한 2002-07 절차 안내서 부록 14 에 나와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SEZ 설립안을 승인하게 된다. 승인위원회에 의한 승인을 받아 통상국은 허가서를 발부한다.

SEZ 설립절차

5.7 사업기획서와 함께 통상국이 발간한 2002-07 절차 안내서에 따라 SEZ 설립을 요청하는 10 부의 신청서를 주 수석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를 승인위원회에 심사를 위임하기 위해 통상국으로 보낸다. 위원회의 승인에 이어 통상국은 국제법의 80-1A 에 의거한 세금 면제를 위한 "동의"로 간주되는 허가서를 발부한다.

SEZ 에 FDI/NRI 의 투자를 위한 정책

5.8 SEZ 설립을 위한 FDI 는 100% 자동승인 대상이므로 그 승인절차는 3.1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6 장

산업공단, 모델타운과 성장센터의 설립

자동승인 정책

6.1 정부는 산업공단/모델 타운/성장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은 웹사이트 www.dipp.nic.in 에 올라있다. 산업정책진흥국의 산업지원사무국은 2002년 4월 1일에 공고된 산업공단 설립계획에 의거 자동승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공단/모델타운/성장센터 설립을 허가했다.

정부승인을 위한 정책 - 권한위임협의체

6.2 자동승인을 위한 요건의 일부 혹은 전부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모든 신청은 상공부의 산업정책진흥국 내에 설립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산업공단/모델타운/성장센터의 설립과 산업공단의 소득세 혜택 활용 절차

6.3 산업공단 건립을 위한 허가 취득과 국세법의 80 1A 조항의 100%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한 서식 IPS-1 은 이 부서의 웹사이트(<http://dipp.nic.in>)에 있으며, 신청은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산업지원사무국의 기업지원반(Udyog Bhawan, New Delhi)으로 제출한다. 자동승인 신청서는 2 부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 등 승인의 경우는 6 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뉴델리에서 6,000 루피 지급조건으로 횡선일람불 어음을 산업정책진흥국 출납 회계담당 앞으로 발행하여 함께 제출한다. 2002년 산업공단설립계획에 따라 자동승인의 자격이 있는 신청은 15 일 이내에 처리되어야한다. 자동승인 자격이 없는 모든 신청은 산업정책진흥국 내에 설립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위원회는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결정사항을 통상 6 주 이내에 통고한다.

산업공단/모델 타운/성장 센터를 위한 FDI/NRI 투자 정책

6.4 산업공단/모델타운/성장센터에 설립을 위해 FDI 가 자동승인제에 따라 100 %

허용되며, 3.12 항에 언급된 절차는 의무승인에 적용된다.

제 7 장

전자 하드웨어 기술공단(EHTP)과 소프트웨어 기술공단(STP) 투자계획

7.1 전자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잠재력을 제고 및 효율적인 전자부품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자 하드웨어 기술공단(EHTP) 및 소프트웨어 기술공단(STP) 기획안은 EOU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수입품에 대한 면세, 수출혜택, 면세 기간 등의 포괄적인 유인과 편의를 제공한다.

자동승인 정책

7.2 소프트웨어 기술공단(STP)의 이사들과 전자 하드웨어 기술공단(EHTP)에 관한 담당 관리들은 신청안이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면 자동승인을 허용한다.

- (a) 의무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 (b) 규정에 따르는 입지를 선정한 제안;
- (c) 관세당국은 세관의 보세규정에 순응하는 생산공장으로서는 모든 제조공정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원자재나 중간 생산물을 다른 제조나 가공을 위해 보세구역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는 사업제안

EHTP/STP 내 FDI/NRI 투자 절차 EHTP/STP 단위 내에 행해지는 FDI/NRI

투자를 위한 모든 신청은 3.3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이면 자동승인 된다.

정부승인 정책 - 관계부처 상설협의회

7.3 자동승인 요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사업제안의 요청은 관계부처 상설협의회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부의 심사와 승인을 요한다.

EHTP/STP 승인 절차

7.4 신청서는 자동승인을 위해 지정된 서식을 작성, STP 이사나 EHTP 담당에게 제출해야하며, 정부승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뉴델리에서 5,000 루피 지급조건으로 횡선일람불 어음을 산업정책진흥국 출납 회계담당 앞으로 발행하여 함께 제출한다. 신청서는 모든 정부 간행물 취급소에서 구할 수 있다.

7.2 항에 언급된 자동승인의 요건을 충족시킨 신청은 2 주 이내에 승인서가 발부된다. 기타의 신청제안서는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상설협의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제 8 장

투자 진흥

8.1 투자자를 위한 산업지원사무국(SIA)은 인도 및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설립과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SIA 는 유망 기업가의 안내역으로서 정기적으로 두 종류의 월간지 "SIA 뉴스레터(SIA Newsletter)" 및 "SIA 통계(SIA Statistics)"와 웹사이트(<http://dipp.nic.in>)를 통하여 정보 및 통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SIA 는 또한 합작파트너를 찾는 잠재적 투자자를 지원하고 분야 부문별 특성과 주 정부의 특성을 비롯 관련정책과 절차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국의 다양한 투자 진흥사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목적지 /투자 인디아(Invest India)

8.2 목적지/투자 인디아 (Invest India) 행사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인도로 유치할 목적으로 인도의 투자정책, 협조적 투자환경 및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다. 상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고위관리 및 재계대표단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투자진흥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 기업인의 개별상담은 물론 분야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짧은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홍보영화도 세미나 도중 상영되고 있다.

전시회/세미나

8.3 산업정책진흥국(DIPP)은 첸나이와 콜카타에서 개최된 국제 가죽 박람회와 2004 년 세계무역박람회에 참가, 각종 자료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으며 전시/박람회를 위해 DIPP 는 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홍보물

8.4 DIPP 가 소책자와 전단 형태로 제공하는 홍보자료는 다음과 같다.

- (i)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안내서-정책 및 절차(Manual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 Policy & Procedures)

- (ii) 목적지 인디아(Destination India)
 - (iii) 인도에의 투자(Investment in India)
 - (iv) 인도 개관(India -a Profile)
 - (v) 기간산업 안내서(책자 및 전단)
 - (vi) NRI 투자의 즉석 손익계산서
 - (vii)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인도진출 전략(Entry Strategies for ForeignInvestors)
 - (viii) 인도의 세제(taxation in India)
 - (ix) SIA Newsletter - 월간 및 연간
 - (x) SIA Statistics - 월간 및 연간
 - (xi) 투자 기회 - 인도 (Investment Opportunities - India)(CD ROM)
 - (xii) 주 및 연방영역의 안내창구 제도 (Single Window System in States/UTs)
- 이러한 간행물은 DIPP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으며(<http://dipp.nic.in>) 세미나/회의 등의 개최기간 중 유망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웹사이트, 온라인 채팅 및 게시판 서비스(<http://dipp.nic.in>)

8.5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보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환경, 주 정부 산업정책, 권장사업, 간행물, 공지사향 및 신문주석/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DIPP 는 투자자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웹사이트의 주요 수록 내용이다.

- = 인도투자에 대한 즉석 손익계산서
- =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안내서 -정책 및 절차
- = 신문 주석, 공지사향 및 보도자료
- = 산업 정책 보고서
- = 최근의 연례보고서
- =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보
- = 사업승인위원회(PAB)/ 기업주 허가취득 면제약관(IEM) 및 의향서(LOI) 신청 현황
- = 주요 산업 개황
- = 주요법률
- = 부속 및 하급 사무소에 대한 정보
- = 기타 내각/부서와의 연계

8.6 웹사이트는 평일 오후 4 시-5 시(인도 표준시간, GMT +5 1/2) 투자자가 FDI 정책 및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답변할 온라인 채팅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온라인 채팅이 투자자들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2003년 채팅을 통해 거의 2,000 건의 질문에 답변했다.

8.7 웹사이트는 게시판 서비스의 설비로도 활용되고있다. 투자자가 채팅을 할 수

없는 경우 게시판에 수시로 질문을 올릴 수 있다. 24 시간 내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산업 분류등급(NIC 코드)

8.8 여러 가지의 승인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식에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국가 산업분류등급(NIC 코드)을 기입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모든 산업 승인 획득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뉴델리 1987년 통계 및 정책추진부 산하의 중앙통계기구에서 간행한 모든 경제활동의 국가산업분류등급(Nation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간행물은 간행물관리소(1, Civil Lines, Delhi-110054) 혹은 정부간행물취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 9 장

투자 촉진

산업지원사무국(SIA)

9.1 SIA는 인도 정부에 의해 상공부의 산업정책진흥국 기업인 및 투자가 지원, 정부승인을 요하는 모든 신청서의 접수와 처리, 신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 통보, 기업인과 투자가의 사업기획 지원(기타 기관과 주 정부와의 연락 관계도 포함) 및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 등을 수행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SIA는 또한 투자 및 기술에 관한 정부의 제반 정책을 공지하며 209개소의 선별된 산업군(群)에 대한 월간 생산 통계를 집계, 발표하고 있다.

기업지원반(EAU)

9.2 산업정책진흥국 내의 산업지원사무국 산하 기업지원반은 외국인 투자 결정에 관계된 다양한 업무를 통해 기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EAU는 산업허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신청서 즉, IEM, 산업허가, 외국인 투자, 외국 기술협정, 100% EOU, EHTP, STP 제안서를 접수하여 신원/조회번호를 기록하고 전산화된 접수증을 발부한다. SIA에 문의하고자 행하는 모든 경우 이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9.3 EOU는 또한 기업인으로부터 투자결정에 관계된 광범위한 질문에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사안별로 해명과 관계부처/기관의 핵심 관료와의 면담도

주선하고 있다. EOU 는 여러 가지의 산업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현황도 알려준다.

외국인투자실시청(FIIA)

9.4 FIIA 는 1999 년 8 월 9 일 설립되어 FDI 승인 사업을 신속히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승인획득을 지원한다. FDI 메가 프로젝트(1 억 루피 이상의 투자 예상액)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부처/주 정부와의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위해 30 개의 부처/부서에 일괄신속처리위원회(Fast Track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미결사안은 FIIA 로 보내진다. 일괄신속처리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http://dipp.nic.in>)에 올라있다.

FIIA 회의

9.5 FIIA 회의는 지역별로 개최되고 또한 특정 국가 투자자와도 이루어진다. FIIA 회의에는 중앙정부 부처의 각료, 주 정부의 고위 관료, 대표적인 경제단체도 참석한다. 외국투자자들도 FIIA 회의에 초청되고 있다. 최상위 산업 협회 즉, 인도산업연합(CII), 인도상공회의소연합(ASSOCHAM) 및 인도상공회의소(FICCI),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등의 자문을 구해왔다. FIIA 는 회의개최 정보를 이런 기관에 보내어 그들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특정국 투자자들과의 회의

9.7 지역회의와 더불어 주요 투자국 투자자들과의 회의 또한 인도에서 개최된다. 최근 특정국 투자자들과 그들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회의가 개최되었다.

= 2003. 8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의 회의

= 2003. 10 프랑스와 네덜란드 투자자와의 회의

= 2003. 12 이스라엘의 투자자와의 회의

투자자와의 직접 접촉

9.8 FIIA 는 추진중인 대규모 FDI 사업(1 억 루피 혹은 그 이상의 투자)승인을 받은 투자자들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감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신 문의를 하며, 각 정부 부처/주 정부들도 이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각각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 년 9 월 이후 FIIA 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는 투자자들이 FIIA 문의할 수 있도록 e-mail 주소(fiia@ub.nic.in)를

알려주고 있다.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웹사이트(<http://dipp.nic.in>)를 통해서도 FIIA 에 문의 가능하다.

투자담당 관리

9.9 산업정책진흥국(DIPP)은 사무차장/과장급 관리들을 FDI 의 촉진을 위해 담당관리를 임명했다. 투자담당관리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부서의 웹사이트(<http://dipp.nic.in>)에 나와 있다.

FIIA 지역회의

FIIA 회의는 아래의 4 개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	주
북부	델리 Delhi, 찬디가르 Chandigarh, 하리아나 Haryana, 히마찰 프라데쉬 Himachal Pradesh, 잠무에 카쉬미르 J&K, 마디아 프라데쉬 Madhya Pradesh, 차티스가르 Chattisgarh, 편잡 Punjab, 라자스탄과 우타를 프라데쉬 Rajasthan and Uttar Pradesh, 우타란찰 Uttaranchal
남부	안드라 프라데쉬 Andhra Pradesh, 카르나타카 Karnataka, 케랄라 Kerala, 폰디체리와 타밀나두 Pondicherry and Tamil Nadu,
서부	Gujarat, Maharashtra, Dadra & Nagar Haveli, Daman & Diu, Goa and Lakshadweep
동부	비하르 Bihar, 즈하르한드 Jharkhand, 오리싸 Orissa, 시킴 Sikkim, 웨스트벵갈 West Bengal, 아쌌 Assam, 아르나찰 프라데쉬 Arunachal Pradesh, 마니푸르 Manipur, 메갈라야 Meghalaya, 미조람 Mizoram, 나갈랜드와 트리푸라 Nagaland and Tripura, 안다만 니코바 섬 Andaman & Nicobar Islands

국별창구

9.10 산업정책진흥국(공업부)은 인도에 상당규모의 투자의욕을 보이는 국가들을 위해 국별 투자상담 창구(Country focus Window)를 개설하였다. 현재, 이 창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일본 및 한국을 상대로 하고있다. 각 창구에 담당국의 고위급 관리들에 의해 사업 투자에 대한 편의 시설과 지원이 제공된다.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

9.11 정부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투자제안서 검토를 위해 외국인 투자진흥위원회(FIPB)를 설치하였다. 재편된 FIPB 는

- (i) 재무부 경제차관 - 위원장
- (ii) 상공부 공업차관 - 위원
- (iii) 상공부 상무차관 - 위원
- (iv) 외교부 경제차관 - 위원

동 위원회는 필요시 차관급과 금융기관 고위관리들, 은행 및 산업 통상분야의 전문가를 호선할 수 있다.

기타의 허가 및 승인 관련 정보

9.12 FDI 를 인도에 유치하기 위한 승인 외에도, 기타의 허가 및 승인 즉, 기업등록, 환경 및 삼림 허가, 공장 및 기계의 수입 허가, 토지 매입, 전력 및 상수도 연결 등이 인도에서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및 승인 대상이다. 관련부서 및/기구의 간략한 세부사항과 웹사이트 주소는 부록 -VI 에 나와있다.

투자 옴부즈맨제도

9.13 사업에 대한 고충의 신속한 처리와 산업허가의 부여 및 수행 지연과 민원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상공부에 투자민원 담당관리를 임명했다. 상공부 부국장보 겸 재정자문관이 지명되었다(이 메일 주소 : nc@ub.nic.in).

고충처리 담당 겸 공동사무국장

9.14 고충 및 민원이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공업부)의 고충처리 담당 관리 및 공동 사무국장에게도 우편이나 EAU 사서함과 상공부 접수대(New Delhi-110011 의 Udyog Bhavan 13 번 정문)를 통해 전달된다.

제 10 장 발간물

SIA 뉴스레터

10.1 월간지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NRI 투자, 지역분류, 전국분류, 외국 직접 투자 관련 제반 승인업무 및 그 달의 NRI 투자, FDI 유치실적 그 달에 발표된 정책 공고 사항과 통계를 소개한다. 1999, 2000, 2001, 및 2002 년간 SIA Newsletter 역시 간행물관리소(1 civil lines, Delhi-110 054)나 정부 간행물을 취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SIA 통계

10.2 산업허가, 100% 수출지향기업, 산업허가 취득의 세부사항, EOU, 외국 기술 합작 등과 관련된 통계를 게재하는 월간지로 209 개의 선택된 산업생산에 대한 수치와 그 달의 정부 정책 발표 내용도 담고 있다. 연간 SIA 또한 간행물관리소나 정부 간행물을 취급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발간물

10.3 여기에는 본 안내서와 부문별 간행물을 포함한다. 항만, 도로, 전력, 통신 및 철도와 같은 특별한 기간산업에 대한 일련의 책자도 발간되고 있다. 기타의 간행물에는 현행의 조세 및 관세제도, 인도에서의 사업을 위한 진입결정권 및 주 정부 및 연방 영역(UTs) 및 단일창구 제도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간물도 있다. 이러한 간행물은 SIA 의 EAU 나 산업정책진흥국의 기간산업개발실과 재외 인도공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들 간행물들은 SIA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Newsletter

2004 년 1 월부터 산업정책지원국은 정책 및 투자 기회를 유망 투자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격월간 e-Newsletter 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e-Newsletter 는 외국인 직접투자 잠재력을 지닌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최근 뉴스와 정보를 담고있다. 최근의 정책과 경제개혁에 대한 기사도 포함된다. 또 산업화와 관련된 중앙/주요 기관과 링크시켜 두었다. 독자란에는 독자의 제안과 반응도 실고있다. 이 e-Newsletter 는 잠재 투자자들 간에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있으며 이 e-Newsletter 는 부서의 홈페이지(www.dipp.nic.in)에 들어가 구독할 수도 있다.

제 11 장

자주 접하는 질문(FAQs)

24. 빈번한 질문 사항들

1. 인도에서 외국회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답. 외국회사들은 연락사무소/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지점, 100% 독립자회사 합작투자 회사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투자나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필수적인 허가는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 혹은

외국인 투자 진흥위원회(FIPB)를 통해서 주어진다. FDI 를 통해 설립된 모든 회사들은 인도 회사법에 따라 기업국 기업등록계에 등재되어야 하며 인도내에서의 모든 이렇게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사업허가(IL)를 요하는 사업의 종류와 승인취득 절차는?

답. 신산업 정책에서 본 안내서의 부록 I 과 부록 II 에 소개된 품목들과 영세산업으로 제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사업허가 취득에서 면제 된다. 사업시설입지는 1991 년 인구조사에 의한 인구수 백만 이상이 되는 도시의 25km 내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정부는 사업허가 취득 절차를 획기적으로 자유화 했다. 사업허가 신청은 IL-FC 형식으로 SIA 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허가는 통상 6-8 주내에 통보된다.

3. 사업허가 면제부문에 대한 영업절차는?

답. 사업허가 취득에서 면제된 사업활동들은 기업주 허가취득 면제약관(IEM)에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서 SIA 에 접수키면, 영업신고 필증을 발급하며 추가의 인가는 필요없다.

4. 인도의 조세정책은?

답. 자국내의 자유화가 시작된 이후로 인도의 조세제도 또한 국가적 우선순위와 다른 국가들의 관행 이 두가지를 균형있게 합리화시키는 중이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이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수령한 것이 아닌 이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도의 세법은 국내 서비스에 대한 특정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하기도 한다. 더욱이 외국인들은 자신의 본국과 인도가 맺은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인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는 수령장소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보수란 급여, 임금, 연금, 각종 수수료, 봉급을 대신 하거나 봉급에 가산되는 수익, 가불 그리고 수당등을 모두 포함한다. 과세대상 지불은 특정이유로 제외되지 않은 이상 모든 수당과 세금균등 지불을 포함한다. 고용주가 허락한 주식 매입 선택권 또한 매각시 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5. 인도의 중요한 노동법 및 규정은?

답. 인도 헌법에 따르면 노동은 중앙정부를 위해 특정사안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자격을 부여받는 동시이행항목의 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도에서 사업수행에 적용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노동법령은 아래와 같다.:

-고용자 예비기금 및 준비법, 1952

- 직원 상태 보험법, 1948
- 근로자 보상법, 1923
- 출산수당법, 1961
- 퇴직금 지급법, 1972
- 공장법, 1948
- 항만 노동자법 (안전및 보건 복지), 1986
- 광산법, 1972
- 최저 임금법
- 특별 수당 지급법 1965
- 계약 노동법[제한 및 폐지],1970
- 임금 지급법, 1936

6. 인도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은?

답. 인도는 가트(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를 체결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확립한 협정 가맹국중 하나이다. 그 중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TRIPS)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는 이 협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의 증진이 요구되는 회원국가들내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과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TRIPS 협정하의 의무사항은 각 회원국의 법적 체계와 관행에 국한한 지적 재산권 보호 최소기준에 준한다.

인도내의 다양한 지적 재산권법들의 지위와 지적재산의 다양한 부문의 기준과 관련, 상표법이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1999년 12월 30일 관보에 공시되었다.

이 법안은 이전의 무역 및 상거래법(1958년)을 철폐하고 이를 대신하였다. 원산지 표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 즉, 상품의 원산지 표시(등록 및 보호)법(1999년), 또한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9년 12월 30일 공시되었다. 이 법에 의거한 규정은 2002년 3월 8일 번호 G.S.R. 176(E)로 공고되었다. 법률과 규약은 1999년 상표법하에 지적소유권 상고위원회(IPAB)의 설립으로 2003년 9월 15일 동시에 발효되었다.

종전의 디자인법(1911년)을 철폐하고 개정된 디자인법(2000년)이라고 불리는 산업 디자인에 관한 산업디자인법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01년 5월 11일 부터 발효 되었다. 특허법(1970년)을 수정하는 특허법안 또한 2002년 5월 14일 통과되었다.

7. 주에 의한 장려책들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답. 인도는 주와 연방지역들로 구성되는 연방 국가이다. 주들은 또한 자국내에 이루어지는 경제 개혁의 파트너들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기업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규정과 절차들을 간소화하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체 설립을 위한 허가발급을 위해 대부분의 주들은 단일창구 체제를 갖추었다. 더우기 자기 주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목적으로 많은 주들이 다양한 세금 감면, 원금과 이자 보조금, 전기세 할인의 형태로 장려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8. 재외 인도인(NRI)에 의한 투자는 허용되었는가?

답. 정부는 재외 인도인(NRI)들에 의한 투자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자동경로와 정부 경로 양자 모두를 통한 NRI 투자 승인의 자유화된 정책을 제공하였다. NRI 들은 부동산과 민간항공 부문에 100%까지의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모든 NRI 투자 신청에 대해 RBI 에 의해 주어지는 자동승인은 공보기록 2(2000 시리즈)의 특정 영역지침서에 언급된 몇가지 예외들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및 사업활동에 있어 100% 까지 투자가 허가된다. 자동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신청은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이윤과 배당금, 사용료, 및 노하우 지불료는 인도로부터 본국송금이 가능한가?

답. 정부/RBI 의 승인을 득한 모든 수익과 배당금, 사용료, 및 노하우 지불료는 송금가능하다. 그러나 통합 지구 종합투자개발, 부동산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NRI 투자에는 거치기간(lock-in period)을 둘 수 있다.

10. 외국인 지분 소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합작회사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가?

답. 주식 매입이나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합작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비율의 변화 없이 외국인 지분만 늘리고자 하는 경우는 공보기록 7 번(1999년 판)의 내용을 따라야한다.
- b) 자본 기반 확장의 방법으로 외국인 지분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기록 2 번(2000년 판)에 따라 신청의 내용에 따라 FIPB/정부의 자동승인 혹은 사전승인이 요구된다.
- c) 기존 인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지분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FIPB/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e) 외국인 제휴업자가 추가되는 경우는 공보기록 18 번(1998 년 판)에 열거된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11. 비 송금성 주식을 송금성 주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답: FIPB 승인이 요구된다. 원래의 투자가 외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환은 조건없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 수익을 NRO 구좌를 통하여 인도로 송금시켜야 한다.

12. FDI 정책 변화를 홍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답. FDI 정책의 변화는 산업정책진흥국(DIPP)에 의해 공보기록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언론에 공표되는 즉시 담당국의 웹사이트(<http://dipp.nic.in>)에 같은 내용이 올려진다.

13. 해외에서의 인도인 투자관련 정책과 절차는 무엇인가?

답. 인도기업의 외국에서의 합작투자사(JVs)들과 독립자회사(WOSs)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권장되고 있다. 인도인의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는 기존 외국인 투자에 신규 혹은 추가 투자를 위해 그리고 해외 기업체 인수를 위해 새로 개척된 외국기업들에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기업들에 대한 직접투자는 공업, 상업, 무역 혹은 호텔이나 관광업체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보험, 오픈엔드형 투자신탁 등의 금융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러한 외국 합작투자사와 독립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신청의 두 부류는 (a) 신속처리와 (b) 일반적 경우가 있다. 신속처리의 경우, 모든 신청은 RBI 에 하고 RBI 에 의해 처리된다. 신속처리 범주 내에서는 민간/공공 주식회사로부터의 해외 합작 및 독립자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신청이 인도측의 투자액이 미화 1500 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네팔이나 부탄에 인도 루피로 투자할 경우 6 억 루피를 초과하지 않으며 인도측의 투자액이 이전 3 년 동안의 연간 평균 수출 및 외환 수익(기존하는 해외 합작 회사 및 독립자회사에 대한 지분 수출이 아닌)의 25%까지라는 조건하에 RBI 의 자동승인의 자격이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준은 이와 다르다.

미화 400 만 불을 넘으나 1500 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투자에 대한 신청들과 신속처리에 합당한 신청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RBI 가 임명하는 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 의장은 상무국장이며 RBI 부행장이 교체의장으로 있다. 미화 1500 만 불을 넘어선 투자 신청은 1500 만 불 이상의 투자액이 GDR 경로로 기금조성이 설정된 것이면 고려할 수 있다. 해외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투자되어질 수도 있는 50%까지의 GDR 기금은 해외 합작투자사에 정부의 특별한 승인에 의거 지분으로 투자될 수 있다.

시간 제약 입찰의 절차를 통해 해외 합작을 하고자 하는 인도 사업가들은 때때로 긴급한 경우 "원칙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RBI 는 "원칙적인"승인을 재가 할 수도 있다. RBI 는 그러한 경우의 승인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인도인의 투자와 관련한 상세한 지침은 재무부의 경제국, 인도 투자 센터의 웹사이트(www.iic.nic.in)에서 볼 수 있다.

14. 국제분쟁조정센터(ICADR)는 무엇인가?

답.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분쟁조정센터(ICADR)는 분쟁에 대한 양자 택일적 분쟁들에 대한 결정을 다른 통로에 의해 국내와 국제 분쟁 사항의 합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 법무부와 회사 법무부의 후원 하에 설립된 자치적인 기구이다. ICADR 은 뉴델리에 본부가 있고 럭크나우(Lucknow)와 하이더라바드(Hyderabad)에 지부를 두고 있다. ICADR 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icadr.org> 에서 얻을 수 있다.

15. 인도를 상대로 하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규제는?

답.

(A) 수출 :

RBI 는 인도에서의 상품 수출과 서비스에 대한 2000 년 외환관리(상품용역의 수출) 규정 내용을 2000 년 5 월 3 일 공고 번호 FEMA 23/2000-RB 로 공지하였다. 이후 수시 개정되었다.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른 수출에 대한 기본요건은 다음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 a. GR(우편 경로를 통하지 않는 모든 수출에 대한 거래)
- b. PP(우편 경로를 통한 거래)과
- c. Softex 형식(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i) 신고 면제

지정된 서식에 상품과 소프트웨어 수출의 신고의무가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 a. 재수입 조건의 상품이 시험목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경우
- b. 10 만 루피 이상의 증여품은 국책은행의 승인을 요한다.
- c. 특정 상한의 가격의 물품이(50 만 루피 까지) 수출 진흥의 목적으로 보내지는 경우.

(ii) 지급 방법

금액은 은행을 통해 수출된 상품의 가격 총액을 의미한다. 여기에 수출업자의 은행 환어음, 지불 명령서, 은행 혹은 개인 수표나 바이어가 인도 방문 중에 지급한 외환어음/외환 여행자 수표, 바이어의 FCNR/NRE 의 구좌로부터 지급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다.

(iii) 전대금융

인도수출입은행(Exim Bank) 및 공인 중개인이 수출대금의 조달을 위해 전대금융권을 부여받는다.

(B) 수입

수입은 인도 상공부 상무국 산하의 대외무역이사회(DGFT)에 의해 규제된다. 공인 중개인은 수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수출입 정책과 FEMA의 관련 규정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

(i) 수입 면허

공인 중개인은 신용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현행의 수출입 정책하에 면허를 필요로 하는 금지 목록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한 수입물품의 거래를 허용한다.

(ii) 수입 대금지급의 결제 시한

현존 규제에 의거, 수입 대금 송금은 이행보증 등의 이유로 대금지급이 보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 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해서는 안된다. 선적 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지불을 포함한 지불지연은 대외통상부채(ECBs)로 간주된다. 공인 중개인은 분쟁, 재정적 곤란 등의 이유로 지연된 수입 부과금 결제를 허락할 수 있다.

(iii) 선금 송금

공인중개인은 인도에 물리적인 형태의 물품이 6 개월 이내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상한 제한 없이 수입물품의 대금을 선 송금을 허용할 수 있다. 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공인 중개인은 선금이 인도로 송환되거나 대금지출이 허용되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짐을 확실히 해야한다.

(iv) 수입 환어음에 대한 이자

공인 중개인은 선적 일로부터 3 년 이내의 기간에 기한부 어음에 대한 이자나 체불 이자 지급을 허용한다.

(v) 수입 증거

관련된 송금을 담당하는 공인 중개인은 수입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vi) 수입 대리업

공인 중개 업자는 명망있는 국제대리업 체인의 회원을 우선적으로 두어 국책은행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국제 대리업 회사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환전 관리 지시, 현행의 수출입정책과 이에 관련한 RBI의 지침/명령에 따를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FAQs의 상세 내용은 부서의 웹사이트에(<http://dipp.nic.in>) 게재되어 있다.

<부록>

부록-I

공공부문 기업목록

1. 원자력
2. 철도 운송

부록-II

산업(개발 및 규제)법(1951)에 의거한 산업허가 필수 산업목록

1. 알콜성 음료의 증류 및 양조
2. 여송연,담배제품 및 담배 대용물로 제조된 상품들
3. 전자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장비: 모든종류.
4. 기폭장치,안전 도화선, 화약, 니트로세룰로즈와 성냥을 포함하는 산업폭발물들.
5. 유독성 화학제품
 - a. 청산과 그 파생 물질
 - b. 포스겐과 그 파생 물질
 - c. 어떤 경우에도 명시되지 않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탄화수소의 디-이소시아네이트 (예: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 약품과 제약품들(1994년 9월에 발행된 수정된 제약정책과 1999년 2월에 눈에 띄게 개정된 내용에 의해)

주의: 여타 기업에 의한 영세사업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시된 입지정책의 완화에 따른 산업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사업허가가 필수적이다.

부록-III

외국투자진흥위원회(FIPB)의 FDI 제안서 심의 지침

(안내문 2.11 행 참조)

아래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가 심사하고 그에 따른 추천을 하도록 하는 지침들이 규정되어 있다.

1. 모든 신청안들은 SIA 에 의해 FIPB 앞으로 15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관청의 논평이 위원회에 사전에 또는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2. 신청안은 위원회가 정부의 결정을 전달하는 동안 30 일의 여유를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 (즉, C&IM/CCEA 의 승인이나 거부 등 양쪽 모두의 경우)
3. 신청안이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요구될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신청자는 의한 FIPB 회의에 해당사항을 호소할 수 있다.
4. 여러 신청안들을 심사하고 추천을 결정하는 동안, FIPB 는 각 신청안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문의 요건및 정책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FIPB 는 복합적인 승인이나 그외의 모든 신청안에 대해 총체적인 입장(즉, 신청안의 내용이 외국인 투자, 기술협력/사업허가 외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도)에서 심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FIPB 의 추천은 오직 외국 금융과 기술협력을 위한 승인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여타 부문에 대한 승인신청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는 별도로 지시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안들을 심사하면서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 (i) 사업 종류가 사업 허가를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만약 사업허가를 요하는 것이면 해당 신청안에 대해 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ii) 신청안이 기술협력을 포함하는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런 경우에 요구되는 기술의 출처와 특성이 이전 되어야 한다.
 - (iii) 신청안이 어떤 수출 의무를 수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신청인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부. (이는 영세사업에 제한된 사업종목및 배당 균형 그리고 100% 수출지향기업(EOU)들과 수출가공구역(EPZ)과 같은 업체를 위한 것)
 - (iv) 신청안이 수출 계획안을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 그런 경우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지들을 확인
 - (v) 신청안이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 등과 같은 계획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것인지
 - (vi) EOU 의 경우 규정된 최소 부가가치 규정과 최소 수출 거래액 달성 여부
 - (vii) 신청안이 산업허가 정책에 규정된 입지제한의 완화 대상인지의 여부
 - (viii) 신청안이 국방 및 전략적 검토가 있는지 여부
 - (ix) 신청안이 이미 동일한 혹은 관련 분야에서 이전에 합작회사나 기술 이전/상표 협정을 맺은 바 있는지에 대한 여부, 신규 합작 회사 및 신규 기술 이전(상표 포함)을 설립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고려 되는 세부적 환경, 신규 신청안이 어떤 경우에도 기존하는 합작회사나 기술/상표 파트너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증명.
7. 신청안 심사시 아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a) 자동승인 대상이 아닌 품목/사업(즉, 자동승인 부적격 품목/사업).
 - (b) 인프라 영역에 포함되는 업종
 - (c) 수출 잠재 업종
 - (d) 농촌이나 지방민들을 위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가능 업종.

- (e) 농업 및 농경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가지는 업종.
- (f) 병원, 인적자원개발, 구조약품 및 장비 등과 같은 보더 큰 사회적 타당성을 가진 업종.
- (g) 기술이나 자본도입을 초래하게 될 신청안.

8. 신청안에 대한 정밀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아래 내용들을 특별히 고려한다.

- (a) 외국인 지분소유의 신청한도(예: 영세기업(SSI)들은 24%, 에어택시/에어라인 운영자들은 40%, 텔레콤 영역의 기본/셀형식/호출기 등은 49%와 같은 부문별 상한고려).
- (b) 외국인/NRI(OCB 포함)/인도내국인 구성의 지분 범위.
- (c) 신청 사업안이 모회사/독립자회사/외국인 투자가 주도적인 합작회사(75%이상) 등에 가져다 줄 지분 범위.
- (d) 신청 외국인 지분이 신규사업 설립(합작회사와 그의 경우 모두)을 위한 것인지 혹은 외국인이나 NRI 의 지분 확장을 위한 것인지 또는 기존 인도기업내의 외국인이나 NRI 의 지분의 신규 유치를 위한 것인지
- (e) 외국인이나 NRI 지분의 신규유치의 경우와 기존 인도기업내의 외국인이나 NRI 지분을 확장하는 경우들에 대해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나 NRI 의 지분 유치및 확장에 대해 이사회 의 결의안이 지지하는지 주주들의 동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여부.
- (f) 기존하는 기업내에 외국인 이나 NIR 의 신규지분을 유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들은 신청의 이유와 지분 유치와 확장의 방식 [즉, 불입자본이나 수권자본, 주식양도(적대적 매수나 그의 모든 경우), 주주할당 발행등의 형식들과 그의 모든 형식].

합작회사내의 인도 비거주인 지분의 허가된 퍼센트내의 증가와 독립자회사내의 불입자본의 확장등과 같은 FIPB 승인에 관한 경우들은 외국인 지분 증가 의도가 SIA 에 충분히 통보가 되고 자금 수취와 주식 할당(인도 비거주 주주들에게) 이루어 진후 30 일 이내에 SIA 에 공식서류로 통보 된다면 FIPB 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g) 주식의 발행/양도/평가 등은 SEBI/RBI 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 (h) 사업이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아니면 두 부문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
 - (i) 업종이 영세사업에 대한 규제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 (j)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부문제한이 수반되는지의 여부 (예. 부동산업은 NRI 투자는 허용하나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 (k) 업종이 오직 상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수출을 수반하거나 수출입 모두를 수반하는 것인지 또한 국내 상거래 활동을 수반하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면 소매업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
 - (l) 신청안이 위험하거나 사용 금지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수입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예.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재활용 플라스틱 등의 수입).
9. 지분 상한이 적용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FIPB 는 각 경우의 특별 요건과 장점을 고려, 규정된 상한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지분을 추천하는것을 고려할 수 있다.
10. 다른 산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각각의 개인 신청을 검토해 51%의 외국인 지분을 추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74%까지의 보다 높은 외국인 지분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해당 사업안이 요구하는 자본 범위와 기술의 질과 특성, 마케팅과 경영기술 요건들 그리고 수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11. FIPB 의 100% 외국인 소유 모회사 및 독립자회사의 신청에 대한 추천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a) 모든 후속 및 다운스트림 투자를 수반하는 “ 지주” 역할만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 (b) 특허기술의 보호가 요구되는지 또는 정교 기술의 도입이 신청되었는지 여부
 - (c) 적어도 50%의 생산이 수출되는지 여부

(d) 컨설팅업을 위한 신청안

(e) 산업 모델 타운/산업공단이나 부지에 대한 신청안

12.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기에 인도 합작투자 파트너를 파악하기 힘든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3-5 년의 기간내에 적어도 그 지분의 26%를 인도측(개인이나 합작회사 파트너이거나 일반대중에게 모두 가능)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신청에 대해 100%의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는것을 고려, 추천할 수도 있다.
13. 이와 같이 합작회사의 인도파트너가 기존 사업의 자산확장 및 기술혁신을 도모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그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의 분할및 비율을 증가(100%까지) 시키는것을 고려, 추천할 수 있다.
14. 무역회사들에 대해서는 아래 사업을 수반하는 경우,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될 수도 있다 .
 - (i) 수출
 - (ii) 수출 및 보세 창고 판매의 벌크 수입
 - (iii) 현찰 판매 도매 무역
 - (iv) 동일 그룹사들 사이에서 최소 75%가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과 판매하는 조건의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1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 인프라및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만이 상한규정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그와 같은 투자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49%를 초과하지 않고 투자사의 경영이 인도인 기업주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상한을 상쇄시킬 수 없다.
16.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발급된 승인서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이 변경되거나 승인서의 발행이후 특정 조건이 추가되어 질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정책과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7. 합작회사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청(100% 독립자회사가 아닌)이 그 외국인 지분이 지정된 비율까지 승인되었을 경우, 이후 추가자본 도입 허용시

그 지분율이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승인된 사업을 하면서, 만약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승인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 이후에 추가 자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FIPB 는 자동승인을 권장할 것이다.

18. 민간은행에 대한 신청안에 대해서는 인도중앙은행(RBI)로부터의 “ 원칙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고려할 것이다.
19. 제한규정을 수반하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규정은 부록- IV 에 소개되고 있으며 각 신청안을 심사할 때 고려된다.

해당 지침은 FIPB 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장으로 각 신청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침이 FIPB 가 신청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의 융통성을 제약하거나 총체성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기준이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각 신청안을 심사함에 있어 FIPB 를 구속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지침은 행정관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같은 경우와 관련하여 FIPB 에 의한 어떠한 추천이나 정부에 의한 결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이 지침은 필요시 신규지침 발행이나 법률조항 혹은 정책을 수정할 정부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발행된 것이다.

위 지침은 때때로 산업지원사무국이 공시하는 변경내용의 범위내에서 수정된다.

부록 IV

부문별 FDI 지침

번호/ 부문/지침

1. 민간부문

RBI 에 의해 수시 발행되는 지침에 의거, 모든 승인대상인 모든 업종 중 74%

-은행업

종합지침(부속서류-A 참조)

-비은행권 금융회사(NBFC)

(a) 아래 19 개 NBFC 사업에 대한 FDI/NRI 투자는 다음 19 개 부문에서 허용됨.

- i) 투자금융
- ii) 증권인수
- iii) 포트폴리오관리
- iv) 투자자문
- v) 재무상담
- vi) 주식중매
- vii) 자산관리
- viii) 벤처캐피탈
- ix) 보관서비스
- x) 채권금융
- xi) 신용조회
- xii) 신용평가
- xiii) 임대 및 용자
- xiv) 주택 용자
- xv) 외국환중매
- xvi) 신용카드
- xvii) 환전
- xviii) 마이크로 신용기금
- xix) 농촌신용기금

(b) 자본기반의 NBFC 를 위한 최소자본화 규정

i) FDI 미화 51%까지 - 미화 50 만 불의 선행 투자

ii) FDI 51%에서 75%까지 - 미화 500 만 달러의 선행 투자

iii) FDI 75%에서 100%까지- 5 천만 달러의 투자
자본 중 75 만 달러는 선행투자 해야하며
잔여금은 24 개월 내에 투자해야 함

(c) 비자금 기반의 최소자본화 규정

승인을 취득한 모든 비자금기반의 NBFC 에 대해 미화 50 만 달러의 최소자본화 규정 적용.

(d)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의 (b)(i)에 언급된 바와 같이(추가 자본도입이 없으며 계열사 운영의 어떠한 수적 제한 없이)미화 5 천만 달러를 유입한다는 조건 하에 인도 회사에 최소한 그 투자 지분의 25%를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100% 운영되는 계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 75% 미만의 외국 자본으로 NBFC 를 운영하는 합작회사는 다른 합작회사를 계열회사로 (b)의 (i)과 (b)의 (ii)에 적용되는 최소자본화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타의 NBFC 활동을 위한 계열사를 설립하도록 허용된다.

(f) NBFC 의 FDI 는 RBI 가 제시하는 관련지침에 따라 자동승인된다. 보험분야의 26%까지의 FDI 는 보험규제 및 개발담당국(IRDA)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승인이 허용된다.

2. 국내항공사

(상세 내용의 민간항공부 지침이 발행됨)

국내항공사는

i) 외국 항공사의 직접 혹은 간접 지분 참여가 없는 조건하에 FDI 40%까지 허용된다.

ii) NRI 에 의한 100%투자가 가능하다.

iii) 자동경로는 없음

공항

FDI 의 100%까지 허용함. 74% 이상은 정부의 허가를 요함.

3. 텔레콤

i) 기본적으로, 핸드폰, 부가가치 서비스 및 위성에 의한 국제 개인용 무선 통신에 허가와 보증요건 및 회사에(투자사 및 투자대상사에) 귀속되는 조건과 외국인 지분 상한과 지분의 양도 및 추가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수반된다는 조건 및 그 외 다른 허가규정들에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49%에 한해 FDI 가 허용된다.

- ii) 게이트 웨이를 통한 ISP, 무선 호출 및 극대극 대역범위에 FDI 의 74%를 허용하는데 49%이상은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허가 및 보증이 필요하다.
- iii) 제조업 활동에는 지분상한 적용이 없다.
- iv) 전화사업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FDI 100%까지 허용된다.
 - a. 게이트웨이를 제공하지 않는 ISP(위성 및 해저 케이블 모두)
 - b. 다크 파이버 제공하는 인프라 공급자(IP 분류 I 에 속함)
 - c. 전자 메일 및
 - d. 음성 메일

위의 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이러한 회사가 세계 다른 지역에도 속해 있을 때 5년 내에 지분의 26%를 인도 대중에게 회수 시킨다는 조건으로 FDI 100% 까지 허용한다.
- b. 위 서비스는 필요시 허가 및 보증요건을 존중해야 한다.
- c. 49%이상의 FDI 에 대한 신청은 사례별로 FIPB 가 심사한다.

4. 석유

- a. a)석유 탐사 b)국립 석유회사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인참여 정책에 의거 중소규모의 석유 탐사(정유제외) 사업은 FDI 100%까지 허용된다.
- b. 석유제품 판매에, FDI 는 자동승인으로 100% 까지 허용된다.
- c.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사업은 정부의 정책과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승인으로 FDI 100%까지 허용된다.
- d. 천연 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FDI 의 100%까지 허용한다.
- e. FIPB 경로 하에서 시장조사와 체계화의 목적으로 100% 독립자회사(WOS)를 허용한다.
- f. FIPB 경로 하에서 투자/자금융자를 위한 100% 소유의 종속회사(WOS)를 인정한다.

석유(정제)

- a. 공공부문(PSUs)인 경우 FDI 는 26%까지 허용되는데, PSU 가 26%를 소유하고 일반인에 의해 48%가 점유된다. 자동승인 대상이 아님.
- b. 민영 인도회사의 경우, 자동승인을 통해 FDI 100%까지 허용된다.

5. 주택과 부동산

이 분야에는 사전 정부승인과 함께 FDI 가 100%까지 허용되는 통합지구(타운십) 종합 개발 및 인보사업 외에는 어떠한 외국인 투자도 허용되지 않는다. NRI 는 다음의 활동에 대한 투자에 허용된다.

- a. 설비를 갖춘 대지의 개발과 조립식 주택 건설
- b. 주거지와 비즈니스 센터 및 사무실을 포함한 상업건물의 건설을 수반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 c. 타운십 종합개발
- d. 도시 및 지역 단위의 도로 및 교량을 포함한 도시 인프라 설비,
- e. FDI 에도 개방된 건물자재 제조에 대한 투자.
- f. 상기의 (a)와 (e)에 참여하는 투자.
- g. NBFC 로서 FDI 에도 개방된 주택 용자기관에 대한 투자.

6. 석탄과 갈탄

- i) 고정 소비를 위한 석탄이나 갈탄광산과 더불어 전력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인도 민간기업에 대해 100%까지의 FDI 가 허용된다.
- ii) 석탄 가공공장은 회사가 석탄 채광을 하지 않고 정제 석탄이나 선광탄을 가공소에서 시장에 팔지 않고 비 정제된 조탄을 석탄가공 공장에 정제 혹은 선광을 위해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석탄처리 공장 설립에 100%까지의 FDI 가 가능하다.
- iii) 고정소비의 목적으로 석탄광이나 갈탄광을 개척 혹은 채굴하는 데 FDI 의 74%까지 허용된다.
- iv) 상기 모든 경우에 FDI 는 해당 투자가 PSU 의 지분의 49%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자동경로 하에 50%까지 허용된다.

7. 벤처 캐피탈

역외신탁기구/회사는 SEBI 규정과 FDI 에 관한 벤처 캐피탈 부문의 특정 상한에 준수하는 조건만으로 다른 회사 또한 자동승인으로 국내 벤처 캐피탈 활동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8. 무역

사업이 주로 수출 활동이거나 수출 상사/무역 상사/수퍼 무역 상사/스타 무역 상사 활동일 경우 자동승인으로 FDI 51%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FIPB 승인일 경우 다음의 요건이 따른다.

- i. 아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회사의 경우 100% FDI 가 허용된다.
 - 수출
 - 수출 보세 창고 판매의 벌크 수입
 - 현물 매입 도매 무역
 - 최소한 75%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른 수입이 같은 그룹의 회사들 사이의 상품과 서비스의 입수와 판매(제 3 의 회사의 사용을 위한 것이나 수송/배포/판매의 목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를 제외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 ii. 수출입정책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종류의 교역이 역시 허용된다.
 - a. A/S 를 제공하는 회사(무역 자체는 아님)
 - b. 인도 내에 자신들의 지분 참여 합작회사를 대신해서 제조된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무역회사들을 위해서는 도매 수준에서 그 합작회사의 상품의 국내 거래가 허용된다.
 - c. 특별한 A/S 를 요하는 업종이나 하이테크 업종들의 무역.
 - d. 사회부문 품목의 무역
 - e. 하이테크, 의료 및 의료 기구 업종의 무역
 - f. 기술제공이나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영세산업 품목은 그 상표로 교역이 가능함.
 - g. 수출을 위한 국내 출처의 상품들
 - h. 회사가 2 년간 시험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판매와 동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i. 만약 해당 회사가 세계 다른 지역에도 속한 것이면 그 회사는 5 년 내에 그 지분의 26%를 인도 일반인의 이익을 위해 회수한다는 조건하에 전자 상거래의 FDI 가 100%까지 허용된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오직 기업간 (B2B) 전자 상거래에만 한정되고 소매 상거래에는 속하지 않는다. FDI 는 소매업에 허락되지 않는다.

9. 인프라/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된 상한규정이 있는 인프라/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상한규정에 대한 직접투자만이 고려될 것이며 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투자회사의 지분 49%를 넘지 않고 경영이 인도인 기업주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이 상한을 상쇄하지 않는다. 자동경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10. 원광

다음의 세가지 활동은 FIPB 를 통해 FDI/NRI 투자가 허용된다. (98 년 10 월 6 일자 결의안 번호 8/1(1) /97-PSU/1422 에 따른 원자력국 발행 상세 지침 참조)

- a. 채광 및 선광
- b. 상기 a 의 부산물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 c. 통합사업[(a)와 (b)의 업무를 모두를 수반]

다음의 FDI 참여는 허용된다.

- (i) 순수 부가가치 사업과 통합사업에 74%까지

- (ii) 순수 부가 가치 사업과 중간 과정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사업을 위해 FDI는 PSU가 26% 미만의 지분을 지닌 중앙/주 정부 PSU 합작회사를 통해 74%까지 허용된다.
- (iii) 예외의 경우: FIPB 승인 전에 원자력 자원 감독원의 인가에 의해서 FDI를 74%가 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11. 방위와 전략산업

NRI 투자를 포함한 외국의 직접투자는 승인취득과 보안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정부의 사전 승인에 의거 26%까지 허용된다. 이 산어비 개인참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부속서류-B에 있다.

12. 농업

정부의 사전허가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FDI의 100%까지 허용되는 상업목적의 경작을 포함한 차산업을 제외하고는 FDI/NRI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인도인 파트너/일반 인도인을 위해 5년 이내에 26%의 지분 회수가 의무적이며,
- 향후 대지 용도변경시 주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규투자 (FDI)에 적용된다.

13. 인쇄매체

신문과 정기 간행물 발행에 대한 다음의 FDI가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허용된다.

- a. 과학 및 기술 잡지, 정기 간행물과 학술잡지의 발행과 인쇄에 FDI의 100%까지 허용된다.
- b.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들의 출판은 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력이 검증되고 편집과 경영권이 인도 거주인에게 주어지며 인도인 지분이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FDI가 26%까지 허용한다. 상세 지침은 정보 방송부에서 간행하였다.

14. 방송

a) TV 소프트웨어 생산

100%의 외국 투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허용된다.

- i) 향후의 모든 방송관련법을 준수하되 승인된 허가에 의거한 보호나 특혜를 주장할 수 없음.
 - ii) 정부의 허가 없이 인도에서 방송행위를 하지 않음
- b) 송신, HUB 등의 하드웨어 설비의 설치.

방송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목적으로 송신 HUB(텔레포트)를 설치하는 제한된(텔레콤 영역에서는 FDI 와 유가증권 모두를 포함해서 FDI 한도가 49%까지) FII/NRI/PIO 지분이 허용된 인도의 민간 법인 주식회사.

주: 위성 방송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연결하는 모든 TV 채널은 경영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심의규정을 준수해야한다.

c) 케이블 네트워크

외국인 투자는(FDI 및 유가증권 투자 모두를 포함한) 불입주식자본의 49%까지 허용된다.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규정(1994 년)의 최소 51%의 인도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한다.

d) 직접 위성 수신 방식(DTH)

FDI/NRI/FII 의 49%를 포함하는 외국인 지분을 최대로 가지는 회사에 DTH 허가 획득의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지분 중 FDI 몫은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e) 지상파 FM 방송

회사법에 의거해 인도에서 등록된 회사가 면허취득의 요건이 된다. FII/NRI/PIO/OCB 에 의한 수시 결정되는 상한에 근거해 제한적인 유가 증권 투자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식 소유는 인도인에 의해야 한다. 회사는 외국인, NRI 및 OCBs 에 의한 투자를 받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는 20%까지의 유가 증권 투자만 가능하다.

f) 지상 TV

지상 TV 송신에는 어떠한 민간 운영자도 허용되지 않는다.

15. 전력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 발전, 송전 및 배전과 관련된 사업에 FDI 의 100%까지 허용된다. 사업비용 및 외국인 직접 투자비와 수량제한은 없다.

16. 약물과 의약품

약물과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필수인 사업허가 취득을 요하거나 제조합 DNA 기술 및 특정의 세포/조직을 겨냥한 형성물의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자동승인을 통해 약물과 의약품의 생산에 FDI 의 100%까지 허용된다. 허가를 요하는 약물과 의약품 및 제조합 DNA 기술 및 특정 세포/조직을 겨냥한 생산된 약물에 대한 FDI 신청은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17. 도로와 고속도로

도로, 고속도로, 차량용 교량, 유료도로, 차량용 터널, 항만 및 항구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사업은 FDI 100% 까지 자동승인에 따라 허용된다.

18. 호텔 및 관광업

자동승인으로 100%까지의 FDI 가 가능하다. 호텔의 범주에는 식당, 해변 휴양시설 및 관광객들에 숙식 등을 제공을 하는 관광 콤플렉스를 포함한다. 여행사, 여행 운영 대리업 및 여행자 운송업, 문화제공 단체, 모험 및 야생 체험 제공, 여행자를 위한 육로, 해상, 항공 운송 설비 단위들, 휴양, 오락, 흥미, 스포츠, 건강 단체 및 세미나/학술회를 개최하는 단체 및 기관이 관광 관계의 여행업에 들어간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외국기술 협약이 자동경로로 주어진다.

- i. 사업 비용의 3%까지가 설계사, 디자인, 감리료로 지불되어질 경우
- ii. 3%까지의 순매출액이 가맹점과 판매/홍보 지원비로 쓰여지고,
- iii. 총 이윤의 10%까지가 보너스를 포함한 관리비로 지불할 수 있을 때.

19. 광업

- i. 다이아몬드와 희귀석 개발 및 채굴에 FDI 는 자동경로 하에 74%까지 허용된다.
- ii. 다이아몬드 및 희귀석을 제외한 금과 은 및 기타 광물의 탐사와 광업 및 정제 가공에 자동경로 하에 FDI 100%까지 허용된다.
- iii. 광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신청인은 같은 분야 및 /혹은 특정의 광물에 현존의 합작회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광산업 분야에 관한 100% 독립자회사 설립에 1998 년 12 월 14 일 공보기록 번호 18(1998 년 판)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20. 우편업

주에 독점적으로 한정된 편지 배달을 제외한 택배서비스에 한하여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FDI 의 100%까지 허용된다.

21. 공해방지

공해방지 설비제조 및 공해방지 체계의 종합관리와 컨설팅 업종에 자동승인으로 FDI 100%까지 허용한다.

22. 광고와 영화

a) 광고

자동경로로 FDI 100%까지 허용한다.

b) 영화

(영화제작, 상영, 배포 관련 서비스)

진입단계 제약없이 신청자에 한해 FDI 100% 까지 허용)

23. 고속 대중지하철 수송

관련된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모든 대중 고속지하철 수송체계에 FDI 100%까지 허용한다.

24. 통합지구(타운십개발)

주택, 상업건물, 호텔, 별장, 도로, 교량, 지하철 등과 같은 도시와 지역 단위의 도심 인프라 시설, 건축자재 제조 등을 포함하는 통합 지구(타운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FDI 가 100%까지 허용. 대지 개발 및 관련 인프라 제공에 통합지구(타운십) 개발의 필수요소다. 이에 대한 상세한 투자지침은 부속서류-C 에 소개되고 있다.

25. 위성은 정부의 사전 허가로 FDI 의 74%까지 허용된다.

26. 복권사업/도박 및 내기

정부는 복권사업, 내기 및 도박은 형태를 불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 기술 협력(FTC)에 대해 일관성 있게 금지해 왔다.

부속서류 - A

은행업 FDI 지침

1. 민영 은행업에 대한 FDI 제한

- a. 인도 상공부에 의해 발행된 2001년 5월 21자 공보기록 4번(2001년판)에 의하면 때때로 RBI 에 의해 발행되는 지침들을 따르는 조건으로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FDI 가 49%까지 자동승인으로 민영 은행들에게 허용될 것이다.
- b. 위에 언급된 민영은행에 대한 49%의 자동승인 FDI 상한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출자 카테고리들이 포함되어 진다.
 - (i) IPO(일반인 대상 신주모집)
 - (ii) 사모(私募)
 - (iii) ADR/GDR

(iv) [아래의 (d)에 따라] 기존의 주주로부터의 주식 획득

- c. 동일하거나 연계된 분야에 금융 또는 기술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자동승인으로 신주발행이 허용되지 않음은 인도정부의 지침에 의해 확인될 것이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FIPB 승인을 요한다.
- d. 은행내의 기존 주식을 인도 거주인으로부터 재외 인도인에게 양도하는것은 자동승인이 적용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재확인 가능하다. 이와 같은 카테고리의 투자자들은 RBI 의 환관리국(ECD)의 “ 원칙적” 승인을 통해 FIBP 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주식양도의 “ 공정가” 는 RBI 가 결정하는데 상장주식은 SEBI 지침을 따르고 비상장 주식은 이전 CCI 지침을 광범위하게 적용, 결정한다. “ 원칙적” 승인의 취득후, 인도거주 주식 판매인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RBI 의 ECD 로 주식 양도의 최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e. 보험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최고 26%로 정해졌다. 보험업에 합작회사/계열회사를 포함하는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청은 RBI 에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험규정및 개발국(IRDA)과의 협의하에 RBI 가 심사한다.
- f. 인도내에 지점들을 둔 외국인 은행들은 RBI 의 승인과 더불어 위에 언급된 49%의 전체상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민영 은행에 대한 FDI 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영 은행에 대한 FDI 제한
국영은행에 대한 FDI 와 유가증권 투자는 은행업법(사업취득과 양도)(1970/80)의 조항 3(2D)에 규정된 의거, 전체 법정 한도인 20%로 제한된다. 동일한 상한제한이 인도주립은행(State Bank of India)과 그 제휴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자의 표결권
다양한 은행업법 규정에 따라 표결권이 행사될 경우이는 아래의 규정에 준한다.

민영은행 - [은행규제법(1949) 12 조(2)] 개인 주주는 보유 주식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체 주주의 총 표결권의 10%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국책은행 - [은행업법(사업취득과 양도)(1970/80)의 3 조(2E)]

중앙정부를 제외한 어떤 주주도 보유 주식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책은행 전체 주주의 총 표결권의 1 퍼센트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인도주립은행 (SBI) - [인도주립은행법(1955) 11 조]

RBI 외 어떠한 주주도 발행주식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BI 와 협의하에 정부는 10 퍼센트 이상의 표결권 행사 가능)

SBI 계열은행 - [SBI (계열은행) 법(1959) 19 조(1)과(2)]

어떤 일반인도 200 주를 초과하여 주주로 등록될 수 없다. SBI 외 다른 어떤 주주도 계열은행 발행주식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RBI 의 승인과 보고의무

(i) 현존 지시에 따라 민영은행 불입자본의 5 퍼센트 이상의 주식양도는 RBI 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불입자본의 5 퍼센트 이상의 FDI 에 대해 민영은행은 은행운영국과 해당 은행의 본사가 위치한 RBI 지점의 담당 부서에 소정서식을 작성, 신청을 요한다.

(ii) FEMA(1999) 규정하에 자동승인이나 FIPB 의 특정 승인으로나 은행의 어떤 신주발행도 환관리의 차원에서 RBI 환관리국(ECD)의 추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인도 은행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 단계의 보고를 요한다.

a. 첫째, 인도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는 약인(約因)된 액수의 수취일로부터 30 일 내, 자본의 수취 날짜와 루피로 환산된 금액, 자본수취한 은행명, 그리고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상세내용등에 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b. 둘째, 주식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회사의 총무는 그 회사가 다양한 규정들이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보고를 FC-GPR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발행된 주가에 도달된 형태를 지정해주는 공인 중개사로부터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은행에 대한 FDI 는 SEBI 규정, 회사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주식보유와 양도 등에 대해 SEBI 나 회사법 조항의 규정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6.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회수

FEMA 1999 하에 발행된 2000 년 5 월 3 일자 RBI 공시 번호 FEMA/20/2000-RB 의 규정 10 과 11 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회수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i) 비거주인에 의한 거래소에서의 주식매도와 공인중매인을 통한 수익 송금은 RBI 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ii) 사적 주식매도의 경우 RBI 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RBI 는 거래소 시세가 적용되거나 상기 규정 10 의 지침에 따라 형성된 가격에 주식매도를 허용한다.
7.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거나 유치 계획중인 모든 상업은행은 상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부속 서류-B

무기와 탄약류 제조허가 지침

방위산업에 대한 26%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민간분야의 방위산업 참여도 100% 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FDI 나 민간분야 투자 모두 공부 기록 4 번(2001 년판) 참조에 공시된 바 허가를 요한다. 아래의 지침은 무기및 병기류의 생산허가를 위한 공시된 지침 내용들이다.

1. 허가 신청자들은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에 의해 심사되어 허가를 받게 된다.
2. FDI 를 수반하는 경우들은 FIPB 에 의해 심사되고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산업정책 및 진흥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된다.
3. 신청자는 인도 회사 혹은 인도 회사의 제휴사여야 한다.
4. 신청회사/사업제휴사의 경영자와 이사회 의 과반수는 인도인으로 하고 해당 회사/ 제휴사의 최고 경영권자(CEO)는 인도인으로 해야 한다.
5. 이사와 최고경영자의 상세한 신상기록이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6. 정부는 재정 상태, 국제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제휴자들과 국내 사업자에 대한 경력을 검증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또는 군대나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 부문등에 대한 과거의 우수한 공급실적을 지닌 디자이나, 연구개발 전문 기업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7. FDI 에 대한 자본화의 하한제약은 없으나, 상품과 기술에 의한 신청사의 경영진이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승인권자는 외국인 투자가 순재산의 적정성을 신청사가 제조하고자 하는 무기와 장비의 범주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8. 외국인 투자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3 년간의 거치기간을 요하며(60% 이상의 NRI 지분을 보유한 NRI 와 OCB 포함) 양도를 위해 FIPB 와 정부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9. 국방부는 제조 상품에 대한 구매보증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해당 장비취득 계획과 전반적인 요건들은 가능한 범위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
10. 상품 생산 용적 범위는 동일하거나 연계된 상품의 기존 용적을 고려해 국방부의 추천과 더불어 신청에 기반한 허가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11. 신청사의 신제품 개발을 포함한 생산 준비활동을 위한 장비수입은 허용된다.
12. 승인 후 생산활동이 시작되면 면허업체는 적절한 안전과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인된 정부기구가 이를 검정한다.
13. 승인을 받은 외국 제휴업자나 고유 연구개발에 의해 생산될 장비의 기준과 시험절차는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정부가 지정한 품질보증기구에 면허업체가 제공한다. 품질보증기구는 완제품을 검사 감독하게되며 면허업체의 품질보증절차를 검사한다. 면허업체에 의해 제조된 제품군(群)이나 단일제품을 포함하게 될 자가보증의 경우에 따라 국방부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가는 정기적이며 갱신을 요한다.
14. 구매차등제(purchase preference)와 가격차등제(price preference)는 공기업국(DPE)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에 부여된다.
15. 민간 제조업자가 생산한 무기와 탄약류는 주로 국방부에 판매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국방부의 사전 허가와 함께 내무부와 주 정부산하 다른 정부기구에 판매될 수 있다. 이런 제품은 국내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판매될 수 없다. 제품의 수출은 탄약제조공장과 공영방위산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과 정책에 의거한다. 비치사(致死) 제품은 국방부의 사전허가로 중앙 및 주정부외의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판매 허용될 수 있다. 면허업자는 자신의 공장들로부터 모든 상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16. 방위산업에 대한 FDI 신청을 FIPB 에 한 경우, 정부의 결정은 주로 산업 정책진흥국의 산업지원사무국에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10 주 내에 전달된다.

첨부 서류-C

통합지구 개발 FDI 지침(주택 및 건축자재 포함)

정부 공보기록 4 번(2001 년판) 에 의해 주택, 상업건물, 호텔, 리조트, 도시와 지역에 기반한 도로, 교량, 대중고속운송 시스템들과 같은 도심 인프라 시설 그리고 건축자재 제조를 포함하는 통합지구(타운십) 개발에 대한 FDI 는 100%까지 허용된다. 토지개발과 연계된 인프라의 제공은 통합지구(타운십)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다.

통합지구(타운십) 개발에 대한 FDI 는 아래의 지침을 따른다.

- i)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은 회사법(1956)하에 인도회사로 등록될 것이며 통합지구(타운십) 개발의 한 부분으로 집합부지와 그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 도시개발 및 빈곤완화부와 여타 부서 및 기구의 추천을 심사해 FIPB 가 처리한다. 도시개발 및 빈곤완화부는 이 업무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할 것이다.
- ii)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핵심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이같은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경력을 토대로 한 통합지구(타운십) 개발이어야 한다.
- iii) 이와 같은 회사에 의해 개발될 구역은 지방자치조례와 규정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의해 최소 100에이커는 되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 조례와 규정의 부재시 최소 약 만명의 인구의 2천 거주지 단위들이 투자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 iv) 투자 외국기업은 사업승인을 취득한 경우 명백한 추진일정을 작성해야 한다.
 - a) 최소 자본은 독립자회사의 경우, 미화 1 천만 달러이고 인도 파트너를 둔 합작회사의 경우, 미화 5 백만 달러이다. 자금은 선투입되어야 한다
 - b) 당초 투자액 상환이 허가되기 이전에 최소 투자의 완료로부터 최소 3 년의 거치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 c) 첫 부지의 소유일로부터 5 년의 기간내에 종합 사업 개발의 최소 50%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투자가가 부득이한 이유로 그 이전에 중단을 원하는 경우, 사례별로 FIPB 가 결정하게 된다.
- v) 종합개발계획/자치조례에 따라 상업목적용을 위한 토지사용, 개발료, 외부개발금과 다른 요금 그리고 설계준비, 건설 계획, 내부 및 주변 개발, 간선(幹線)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른 인프라의 개발등에 관한

규정들은 지방 투자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범위와 표준에 의거해 투자가의 책임으로 설정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범위가 없는 모든 주 정부는 도시개발 및 빈곤완화부가 제시하는 도시개발 계획 체계화 및 수행안을 주된 원칙으로 삼아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vi) 경우에 따라 경찰서, 우유판매점과 같은 주변서비스를 위한 집합 영역의 토지는 정부나 지방 당국 및 관청에 무료제공도 가능하다.
- vii) 개발업체는 (i) 학교 (ii) 쇼핑단지 (iii) 마을회관 (iv) 식량배급소 (v) 병원 / 진료소등과 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개발업체가 자체 개발하고 주택 점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viii) 운동장, 공원 등을 적절하게 개발한 후 개발업체는 지방당국에 무료로 해당 시설을 제공한다.
- ix) 개발업체는 지방법규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표준을 확보해야 한다.
- x)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경우에 따라 외국투자진흥위원회가 위에 언급된 어떠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에 근거한 형태의 정당한 법 절차의 지침이 생성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활용될 것이다.

부속 서류-V

1991 년 잠정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 1 백만 이상 보유 도시목록

도시 이름

1. 그레이트 뭄바이(Greater Mumbai) U.A.
2. 콜카타(Kolkata) U.A.
3. 델리(Delhi) U.A.
4. चेना이(Chennai) U.A.
5. 하이드라바드(Hyderabad) U.A.
6. 벵갈로르(Bangalore) U.A.
7. 아마다바드(Ahmedabad) U.A.
8. 푸네(Pune) U.A.
9. 칸푸르(Kanpur) U.A.
10. 나그푸르(Nagpur) U.A.
11. 러크나우(Lucknow) U.A.
12. 수라트(Surat) U.A.
13. 자이푸르(Jaipur) U.A.
14. 코치(Kochi) U.A.
15. 코임바토르(Coimbatore) U.A.
16. 마도다라(Vadodara) U.A.
17. 인도어(Indore) U.A.
18. 파트나(Patna) U.A.
19. 마두라이(Madurai) U.A.
20. 보팔(Bhopal) M.C.
21.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 U.A.
22. 바라나시(Varanasi) U.A.

23. 러다아나(Ludhiana) M.C.

*주

U.A.: 도시지역 M.C.: 지자체

부록-VI

허가/승인 기관 및 웹사이트

관련업무	관련 부처/부서	웹사이트 주소
승인제 폐지된 산업을 위한 기업주 허가취득 면제약관 사업승인/사업수행승인	산업정책진흥국, SIA (산업지원사무국) 산업정책진흥국, SIA (산업조력 사무과)	http://dipp.nic.in http://dipp.nic.in
기술이전 승인 (i) 자동승인 (ii) 정부승인(PAB)	인도중앙은행 산업정책진흥국, SIA (산업지원사무국)	http://www.rbi.org.in http://dipp.nic.in
금융협력 승인 (i) 자동승인 (ii) 정부승인(FIPB)	인도중앙은행 경제업무 담당국	http://www.rbi.org.in http://finmin.nic.in
산업공단승인 (i) 자동경로 (ii) 자동경로가 아닌 경우 (상임위원회)	산업정책진흥국, SIA 산업정책진흥국, SIA	http://dipp.nic.in http://dipp.nic.in
회사등록과 사업 개시증 FDI 정책과 재외인도인 (NRI)와 해외법인체(OCB) 의 투자 진흥 및 장려 관한사항	회사업무국(기업등록계) 산업정책진흥국, SIA	http://dca.nic.in http://dipp.nic.in
외환 관련사항 세제 관련사항 직접세 관련사항 소비세 및 관세에 관한 제재	인도중앙은행 국세청 직접세중앙회 소비세 및 관세 중앙회	http://www.rbi.org.in http://finmin.ni.in http://incometaxindia.gov.in http://www.cbec.gov.in
노사관계 관련사항 상품 수입 환경 및 삼림 허가 관련제재	노동부 대외무역이사회 환경 및 삼림부	http://labour.nic.in http://dgft.delhi.nic.in http://envfor.nic.in
인도인의 해외투자	경제국, 인디아투자센터	http://iic.nic.in

대지 할당/산업 지역 내
용도 변경, 창고, 대지
구입, 대지 건축 계획
승인, 상수도 연결 등

관련 주 정부담당국

부록-VIII 주/UT
웹사이트 참조

부록-VII

주요 담당부처/국 웹사이트

산업정책진흥국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http://dipp.nic
정보방송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 http://pib.nic.in
정보기술부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 http://www.mit.gov.in
석유화학부(Ministry of Chemicals & Petrochemicals)	- http://chemicals.nic.in
광산청(Department of Mines)	- http://mines.nic.in
전력부(Ministry of Power)	- http://powermin.nic.in
생물 공학부(Ministry of Biotechnology)	- http://dbtinindia.nic.in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 http://tourismofindia.com
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	- http://commerce.nic.in
대외무역이사회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 http://dgft.delhi.nic.in
폭발물담당국(Department of Explosives)	- http://explosives.nic.in
환경삼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	- http://envfor.nic.in
통신국(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 http://www.dotindia.nic.in
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	- http://www.education.nic.in
노동부(Ministry of Labour)	- http://labour.nic.in
신에너지자원부 (Ministry of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	- http://mnes.nic.in
석유 및 천연가스부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 http://petroleum.nic.in
영세기업 및 농경산업부 (Ministry of Small Scale Industries & Agro and Rural Industries)	- http://ssi.nic.in
방직부(Ministry of Textiles)	- http://texmin.nic.in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 http://www.rbi.org.in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 http://civilaviation.nic.in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http://finmin.nic.in
기업업무청(Department of Company Affairs)	- http://dca.nic.in
철도청(Ministry of Railways)	- http://indianrailways.gov.in
석탄부(Ministry of Coal)	- http://coal.nic.in
외무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	- http://meaindia.nic.in
중공업 청(Department of Heavy Industries)	- http://dhi.nic.in

통계 및 프로그램 수행부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http://mospi.nic.in
선적부(Ministry of Shipping)	-http://shipping.nic.in
도로수송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	-http://morth.nic.in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http://wrmin.nic.in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http://urbanindia.nic.in
특허 디자인 및 상표관리청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http://patentoffice.nic.in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http://www.bis.org.in

부록 - VIII

주/연방 웹사이트

안다만 니코바(Andaman & Nicobar)(UT)	-http://andaman.nic.in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http://www.andhrapradesh.com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http://arunachalpradesh.nic.in
아쌌(Assam)	-http://assamgovt.nic.in
비하르(Bihar)	-http://bihar.hypermart.net
찬디가르(Chandigarh)(UT)	-http://chandigarh.nic.in
차티스가르(Chhattisgarh)	-http://chhattisgarh.nic.in
다드라 및 나가르 하벨리(Dadra & Nagar Haveli)(UT)	-http://oidc.nic.in
다만 및 듀(Daman & Diu)(UT)	-http://daman.nic.in
델리(Delhi)	-http://delhigovt.nic.in
고아(Goa)	-http://goagovt.nic.in
구자랏(Gujarat)	-http://gujaratindustry.gov.in.
하리아나(Haryana)	-http://haryana.nic.in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http://himachal.nic.in
자무 및 카시미르(Jammu & Kashmir)	-http://jammukashmir.nic.in
자르칸드(Jharkhand)	-http://jharkhand.nic.in
카나타카(Karnataka)	-http://www.kar.nic.in
케랄라(Kerala)	-http://www.keralagov.com
락셔드weep(Lakshdweep)(UT)	-http://lakshadweep.nic.in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http://mpgovt.nic.in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http://www.maharashtra.gov.in
마니푸르(Manipur)	-http://manipur.nic.in
메갈라야(Meghalaya)	-http://meghalaya.nic.in
미조람(Mizoram)	-http://mizoram.nic.in
나갈랜드(Nagaland)	-http://nagaland.nic.in
오리사(Orissa)	-http://orissagovt.nic.in

폰디체리(Pondicherry)(UT)	- http://pondicherry.nic.in
편잡(Punjab)	- http://punjabgovt.nic.in
라자스탄(Rajasthan)	- http://www.rajasthan.gov.in
시킴(Sikkim)	- http://sikkim.nic.in
타밀 나두(Tamil Nadu)	- http://www.tn.gov.in
트리푸라(Tripura)	- http://tripura.nic.in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 http://www.upgov.nic.in
우타란찰(Uttaranchal)	- http://www.uttaranchalassembly.org
웨스트 벵갈(West Bengal)	- http://www.wbgov.com